

# 呂氏春秋 十二月紀의 성격

李 城 九

## 머리말

- I. 傳統性과 그 지향
- II. 실천성과 이념성

## III. 관료의 등장과 그 의미

- 옛 음 말

## 머리말

『呂氏春秋』는 前漢末 劉向·劉歆 父子에 의해 ‘漫羨而無所歸心’ 한 雜家<sup>1)</sup>로 분류된 이래 현재까지도 思想的 독자성이나 통일성이 결여된 백과전서式의 諸子思想雜輯이라는 타성적 평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작 先秦時代研究資料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十二紀首篇, 즉 十二月紀가 『呂氏春秋』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그 月令의 의양에만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주로 時令史 연구素材로만 이용되었을 뿐, 『呂氏春秋』의 전체 구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여타 篇들과의 관련성은 거의 간과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옹변한다. 심지어 十二月紀의 설정이 단순히 신기한 說로써 序頭를 장식하기 위함이었다<sup>2)</sup>는 정도까지의 해석에 이르면 『呂氏春秋』에 대한 雜家的 인식의 편향성은 극에 달하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런 현상은 相異한 이론의 특성과 그 비교만이 강조되었던 전통적 諸子분류법의 맹점<sup>3)</sup>에서 야기된 병폐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呂氏春秋』를 특징지우는 雜家的 종합주의야말로 戰國의 一家之學의 한계

1) 『漢書』, 卷30, 「藝文志」.

2) 島邦男, 「五行思想と禮記月令の研究」, 東京, 1971, p. 68.

3) Loewe, Michael,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London, 1982, pp. 6-16 참조.

를 초극하려는 전국 말 思想界의 모색이었다<sup>4)</sup>는 式의 역설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자칫 雜家라는 분류상의 호칭<sup>5)</sup>을 『呂氏春秋』의 본질인 양 이해 함으로써 그것을 無定見한 편집물로 규정했던 종래의 선입견적 오류를 순환적으로 되풀이할 위험성이 크다. 오히려 『呂氏春秋』에서 정점을 이루는 전국 말 諸子의 종합주의 경향은 조만간 현실로 도래할 統一天下에서 구현될 만한 新질서의 이상을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타당할 듯하며 따라서 구체적 편찬 배경이나 의도와는 별도로 전국 최말기의 통일지향적 시대정신의 총체적 반영물이라고도 할 『呂氏春秋』의 본질적 지향은 이러한 종합주의를 매개로 추구된 新時代 構想에 있다고 보인다. 『呂氏春秋』를 이처럼 잡다한 편집물이기는커녕 新時代 待望의政論書로 位相설정해 보고자 할 때 그 구체적 겸중소재로서 특히 안성맞춤이라 판단되는 것이 바로 바로 十二月紀이다.

十二紀·八覽·六論으로 구성되는 『呂氏春秋』에서 중추적 本論에 해당하는 十二紀는 각 紀 5篇씩으로 이루어진 도합 60篇에 대한 총칭이다. 그리고 본래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月令을 十二紀 각각의 首篇에 분산배치한 것이 이른바 十二紀首篇 또는 十二紀月令으로도 일컬어지는 十二月紀이다. 十二月紀는 그 首篇으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十二紀라는 편제 설정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일단 『呂氏春秋』의 전체구도에서 차지하는 그의 높은 비중을 짐작케 한다. 게다가 『呂氏春秋』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 간에 많은 토론을 거쳐 다양한 학파의 주장들이 체계적으로 수렴된 결과로 보이는 그의 整齊된 내용 및 後續篇들과의 사상적 관련성<sup>6)</sup>을 중시해보면 十二月紀는 十二紀의 綱領<sup>7)</sup>이자 따라서 『呂氏春秋』 전체구성의 핵심<sup>8)</sup>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十二紀의 '紀'라는 용어 설정도 十二月紀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9)</sup> 필자가 十二紀首篇 또는 十二紀月令과 같은 관용적 어휘 대신 굳이 十二月紀 쪽을 택한

4) 町田三郎, 「秦漢思想史の研究」, 東京, 1985, pp. 46-47.

5) 전통적 諸子분류법의 실질적 시발점을 이루는 劉氏父子의 분류가 철학적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 圖書관리를 위한 실무상의 불가피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Loewe,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p. 6)고 본다면 雜家 역시 편의상의 분류호칭에 불과하다.

6) 陳奇猷, 『呂氏春秋校釋』一,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 3의 註1 참조.

7)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第二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3 修訂本, p. 471.

8) 町田三郎, 「秦漢思想史の研究」, p. 48.

이유도 여기에 있다.

十二月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통치의 大綱 또는 典範으로서의 면모에 전혀 손색없는 그 내용이다. 거기에는 農事를 비롯하여 民力동원·賞罰·祭祀·戰爭·救恤·山林叢澤의 管理·音樂·商工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치부문의 理想이 天子에 의해 발포되는 時令의 형태를 빌어 제시되어 있다. 이는 十二月紀가 조만간 도래할 통일된 천하질서 下에서 구체화될만한 통치원리의 청사진으로서 제시된 것이었으리라는 추정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十二月紀가 종래 주로 時令의 전개의 일단계나 또는 隅陽五行思想의 발전양태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온 것은 十二月紀 및 이를 포함하는『呂氏春秋』편찬의 시대적 특수성을 거의 간과한 결과 초래된 본질왜곡이라고까지 극언할 수 있다.

本稿는 以上과 같은 기본 시야 위에서 十二月紀가 단순한 時令이 아니라 일관된 통치이념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신질서 구상이었음을 논증해 봄으로써 그의 본질적 성격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I. 傳統性과 그 지향

春秋戰國時代의 변혁을 거치면서 정착된 중앙권력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기층민간사회는 여전히 뿌리깊은 전통적 관행과 주술적 세계관을 강하게 잔존한 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배타적 거부와 완만한 수용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의 온존 下에 특히 미중유의 통치지역 팽창을 수반하면서 출현한 진한국의 지배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지배의 효율적 관철은 거의 불가피하게 전통적 가치와 관습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秦漢代의 縣公社 설치가 전통적 민간질서의 정신적

9) 司馬遷이 『史記』편찬에서 十二本紀를 설정한 것도 이러한 『呂氏春秋』의 體裁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물론 그가 天官을 관장하는 太史令이었다고 볼 때 本紀 12篇은 木星의 주기 12년, 일년 12개월, 12支 등 天文·曆法上의 고려 속에 결과한 그의 독자적 안출<李成珪 編譯, 『史記』, 1987, 서울대학교 출판부, 제4장 「構成과 敘述의 特色」, p.65>이라고도 하겠지만 十二本紀 전체를 놓고 보면 필자의 추측도 타당한 것 같다), 특히 그 本紀의 命名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의 측인 帝王에 관한 서술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同上, p.59)는 것은 十二月紀가 天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행사라는 것과 극히 흡사하다.

구심점이었던 社를 민중통치의 말단기관으로 이용한 것<sup>10)</sup>이라는 지적이 그려하고, 漢高祖가 각 縣에 公社 설치를 명하거나, 각 지역의 巫를 중앙에 초치하여 해당지역의 神을 祭祀토록 한 것도<sup>11)</sup> 제사를 매개로 한 지역통합, 또는 토착적 지역제례의 중앙 祭儀체계 內로의 흡수·통합을 목표한 것이다. 물론 이는 본질적으로 祭儀와 占卜 중심의 神政國家에서 法治·行政 중심의 성격으로 발전한 秦漢帝國이 전 단계의 성격을 온존함으로써 오히려 지배체제를 粉飾·강화하기 위함이었다.<sup>12)</sup>

통일천하의 신질서를 구상했던 十二月紀의 편자들 역시 이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한 듯하다. 祭儀를 비롯하여 十二月紀에 보이는 허다한 전통적 관습은 그 본래적 순수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효율적인 민지배를 위한 허구적 분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十二月紀에 일관하는 외양적 전통회귀 경향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선 除道成梁이라는 전통적 歲時관습이 十二月紀에서 어떤 본질적 변환을 드러내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除道成梁은 문자 그대로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歲時慣習으로서 『國語』에 그 편린이 남아있는 夏令에서 우선 확인된다. 즉,

故先王之教曰 雨畢而除道 水涸而成梁… 故夏令曰 九月除道 十月成梁。<sup>13)</sup>

이처럼 除道와 成梁은 각기 9월과 10월에 실시되는 歲時관행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孟子』의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즉,

(孟子曰) 歲十一月 徒杠成 十二月 輿梁成 民未病涉也。<sup>14)</sup>

上記 서술의 十一·十二月은 周曆으로, 夏曆으로는 각기 9月과 10月에

10) 古賀登, 「漢長安城と阡陌・縣鄉亭里制度」, 東京, 1980, p. 317.

11) 『史記』, 卷28, 「封禪書」, 「(漢高祖) 因令縣爲公社 …… 長安置祠祝官女巫 其梁巫祠天地天社天水房中堂上之屬 晉巫祠五帝東君雲中君司命巫社巫祠族人先炊之屬 ……」

12) 李成珪 編譯, 『史記』, 「編譯者の 말」, p. XV.

13) 『國語』, 「周語」中.

14) 『孟子』, 「離婁」下.

해당하며 徒杠이 걸어서 건너는 다리라면 이는 除道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上記한『孟子』의 귀질은 앞서 인용한 夏令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九月除道 十月成梁'은 古來의 보편적 歲時慣習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1979年 四川省 青川縣에서出土된 戰國秦의 田律木牘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九月大除道及除澗 十月爲橋.<sup>15)</sup>

上記 인용이 田律의 일부임이 확실하다고 볼 때 이미 戰國時代에는 除道成梁이 慣習에서 강제적 律令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보편적인 歲時慣習으로서의 除道成梁은 十二月紀에는 어떻게 보일까? 우선 除道를 살펴보면 季春, 즉 3월에 '修利隄防 導達溝瀆 開通道路 無有障塞'으로 되어있는 반면 季秋, 즉 9월에는 이같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은 十二月紀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禮記』의「月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脫漏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呂氏春秋』의「晉律」篇에도 '姑洗之月 達道通路 溝瀆修利 申之此令 嘉氣趣至'로 되어있어 姑洗之月(즉, 3월)에만 보이고 無射之月(즉, 9월)에는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아도 十二月紀에서 9월의 除道가 베껴지는 과정에서 脱漏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十二月紀의 내용을 거의 답습한『淮南子』의「時則訓」의 경우 季春에는 '達路除道 從國始 至境止'로 되어있는 한편, 季秋에는 '通路除道 從境始 至國而後已'로 되어있다. 時則訓에서 季春과 季秋의 두번에 걸쳐 除道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왜 十二月紀는 전통적 관습에 反하여 季春에만 除道를 행하는 것일까? 이같은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는『管子』「四時」篇에 보이는 다음의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같다. 즉,

東方은 星에 해당하고 그 時는 春이며 그 氣는 風이고 風은 木과 骨을 生한다. 그 德은 풀기를 즐겨하여(喜羸) 發出의 時節이다.…… (春에 할 일

15) 四川省博物館青川縣文化館, 「青川縣出土秦更修田律木牘」, 『文物』, 1982-1, p. 11.

은) 堤防을 治하고, 밭갈고 김매며 심고, 津梁을 正하고 溝瀆을 修하며, 집을 보수하여 물이 흐르도록 하고, 怨을 풀고 罪를 赦하며 四方을 通하게 한다(解怨赦罪 通四方). 그렇게 하면 柔風과 甘雨가 이른다.

上記한 春季의 行事는 十二月紀의 季春에 보이는 ‘修利隄防 導達溝瀆開通道路 無有障塞’과 매우 흡사하다. 특히 ‘通四方’과 ‘開通道路 無有障塞’은 단순히 여타의 時令 資料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春季의 除道라는 측면에서의 일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막힌 것을 開通한다’라는 철학적 인식에서부터의 일치까지도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16)</sup> 이처럼 드물게 보이는 유사성이 「四時」篇과 十二月紀 兩者的 밀접한 思想의 관련성을 밝해주는<sup>17)</sup> 것으로 보아 大過 없을진대, 上記 引用의 전후 맥락을 통해 春과 ‘通四方’의 상관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十二月紀 역시 春季에 ‘開通道路’, 즉 除道라는 行事를 설정한 배경이나 이유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이런 시각에서 上記 내용을 검토해볼 때 주목되는 점은 (여타 季節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우선 春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고 나서 그에 합당한 時令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16) 물론 季春의 除道에 대한 用例는 『淮南子』의 「主術訓」에도 다음과 같이 보인다. 즉, '故先王之政 ..... 鳴燕降而達路除道 陰降百泉則脩橋梁' (高誘의 注에 따르면 達路除道는 '三月之時'이고 脩橋梁은 '十月之時'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開通道路 無有障塞'이나 '通四方'에서 느껴지는 理念性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三月除道 十月脩橋梁은 여타 時令資料와 비교할 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17) 『管子』「四時」篇이 五行의 配當이나 全體의 整備에 있어 十二月紀보다 훨씬 소박하다는 근거에서 이를 戰國末의 資料로 추측하는 견해(金谷治, 『管子の思想』, 東京, 1987, p.239)를 중시한다면 十二月紀 쪽이 「四時」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島邦男 역시 '原始十二紀' (그는 現行 十二月紀를 『禮記』「月令」의 편찬 後에 그 「月令」에 의거하여 漢代 中期 이후 재정비된 것이라고 보고, 이것과 구분하여 呂不韋가 『呂氏春秋』를 편찬할 당시의 十二月紀를 原始十二紀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세한 반론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儒敎國敎化 이후 당시 儒者들이 經典에도 속하지 않는 『呂氏春秋』에 대해 대폭적 수정을 가할 정도의 관심을 기울였을까는 극히 의심스럽다고 볼 때 그의 전체적 입장에는 찬동할 수 없다)가 「四時」篇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견해를 괴력하고 있다(同, 『五行思想と禮記月令の研究』, 第二·三章 참조).

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通四方’은 春德, 즉 風德으로서의 嬴에 상응하는 同類의 행위이자 그 구체적 일환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렇다면 ‘通四方’의 이념적 기초를 이루는 嬴의 명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十二月紀의 孟秋와 『管子』「四時」에 보이는 다음의 用例가 제공해주는 것 같다. 즉,

- ① 天地始肅 不可以嬴.
- ② 春嬴育 夏養長 秋聚收 冬閉藏.

上記의 내용이 명시하듯 嬴은 肅·閉의 反對語로서 解·開의 意味임에 틀림없다. 말하자면 嬴은 따스한 봄바람이 추운 겨울동안 막히고 얼어붙었던 자연을 녹이고 풀어 만들을 다시 蘚生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어휘이다. 앞서 인용한 「四時」篇에서 發出의 時節인 春의 氣가 風이며 그 德은 ‘喜嬴’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여기 있으며, 가령 『呂氏春秋』의 「孟春紀」와 「貴信」에 각기 보이는 ‘東風解凍’이나 ‘春之德風 風不信 其華不成 華不成則果實不生’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前記한 「四時」篇에 열거된 春季의 여러行事들, 즉 津梁과 溝瀆을 보수하여 사람의 王래와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거나 憎恨을 풀고 罪를赦免하는 행위 역시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 통하게 하는 春의 성격에 합치되는 것이다. ‘通四方’ 역시 그 일환이었음은 퀘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十二月紀가 九月除道의 전통을 뿌리치고 季春에 ‘開通道路 無有障塞’이라는 政令을 설정한 것 역시 寒冬의 閉藏된 氣를 풀고 敦는 春嬴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었음에 틀림없다.<sup>18)</sup> 결국 十二月紀는 民의 王래나 여행의 편의를 위해<sup>19)</sup> 전통적으로 거행되어온 歲時慣習인 除道를 일면 담습하면서도 그것을 春과 합일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시기를 9月에서 3月로 변경시킨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전통적 관습을 매개삼아 春季의 시급

18) 앞서 인용한 孟秋紀의 ‘天地始肅 不可以嬴’은 이미 秋季에 ‘開通道路’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언명하는 내용이다.

19) 『孟子』「離婁」下의 ‘歲十一月 徒杠成’에 대해 焦循의 『孟子正義』는 ‘除道所以便行旅’라 注釋하고 있다. 한편 『禮記』「月令·中秋」의 鄭玄注는 ‘王居明堂禮曰 季秋除道致梁 以利農也’라 하는데 除道致梁이 農事과 직결되는 行事로 보긴 어렵고 孔疏가 해석하듯 農民의 收穫物을 轉運하기 편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農事를 독려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자. 한 편 앞서 보았듯이 이 除道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時令으로서 늘 함께 언급되던 十月成梁은 十二月紀에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

『管子』「四時」篇은 前記 인용 中의 ‘津梁을 정한다’는 귀절에서 확인되듯이 十月成梁의 전통을 변경하여 春令의 하나로서 橋梁補修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四時」와 일치를 보였던 十二月紀의 春令에서는 이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成梁과 除道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보아도 이는 다소 의아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의아함을 풀기 위해 우선 孟冬紀에 보이는 다음 내용을 검토해보자. 즉,

戒門閭 修楗閉 …… 備邊境 完要塞 謹關梁 塞蹊徑.

上記하듯 十月 孟冬에 城邑의 門閭를 닫아걸고 邊境과 要塞를 完備하며 蹊徑(즉, 道路)을 폐쇄한다는 것은 季春紀의 ‘開通道路 無有障塞’이나 仲夏紀에 보이는 ‘門閭無閉’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政令임에 틀림없다. 이는 물론 孟秋紀의 ‘天地始肅 不可以贏’에서부터 이미 예견되는 행위이며 또한 闭藏을 본질로 하는 冬季의 성격<sup>20)</sup>에 합일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후 내용에 의거할 때 ‘謹關梁’ 역시 關所와 橋梁을 통제 또는 폐쇄함으로써 民의 往來를 차단하려는 意圖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政令이며, 따라서 그것은 十月에 橋梁을 축조 보수함으로써 교통과 왕래의 편리를 도모했던 전통적 관행과는 전혀 역행하는 발상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는 九月除道의 전통을 三月의 行事로 변경한 十二月紀의 원칙에는 논리적으로 합치되는 조치이다.<sup>21)</sup>

20) 「孟冬紀」, (天子)命有司曰 天氣上騰 地氣下降 天地不通 閉而成冬 令百官 謹蓋藏.

21) 十二月紀의 내용을 거의 담습한 『淮南子』「時則訓」이 季春과 季秋에 除道의 실시를 설정했음은 전술한 대로인데, 이 「時則訓」에는 上記한 十二月紀 孟冬의 내용이 ‘警門閭 脩楗閉……脩邊境 完要塞 絶蹊徑’로 되어 있다. 즉, ‘謹關梁’의 귀절만 삭제된 채 여타의 서술은 거의 동일하다. 이는 아무래도 季秋의 除道에 합치시키기 위한 고의적 수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上記한 孟冬紀의 내용 전체가 冬季의 본질인 闭藏의 구체적 실현일진대 그 중에서 ‘謹關梁’ 만을 삭제함으로써 季秋의 除道와 소극적이나마 상응케한다는 것은 十二月紀의 전체적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時則訓 編者的 고육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時則訓의

그러면 十二月紀가 以上과 같이 전통적 歲時慣習을 개변하면서까지 季春의 ‘開通道路’와 孟冬의 ‘謹關梁’을 고집해야했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隕陽의 원리에 입각하여 春夏와 秋冬을 각기 開와 肅·閉의 시기로 이해한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극히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음이 역력하다. 즉, 緊張과 弛緩, 剛과 柔라는 二元的 牧民 원리를 관철함으로써 효율적 인민통제와 생산력의 극대화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그것이다.

우선 풀고 여는 弛緩期이자 農事期인 春夏에는 秋冬에 훠손된 水路와 道路를 개통하고, 가축을 방목하듯이 農民으로 하여금 모두 城邑 밖으로 나가 田野에서 農事에 진력토록 하며,<sup>22)</sup> 農事에 방해가 되는 요역 징발을 금지한다.<sup>23)</sup> 반면 肅·閉의 緊張期이자 수확 이후의 農閑期인 秋冬에는 가축을 우리 안에 가두듯이 人民을 城邑 내부에 두고 철저히 통제한다. 예컨대 앞서 보았듯이 城邑의 門閭를 폐쇄하고 關梁과 道路를 차단하거나 徒民을 금지하는<sup>24)</sup> 조치들이 그러하며 또한 요역을 징발하여 城郭을 보수함으로써<sup>25)</sup> 人民으로 하여금 城邑 밖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유나 解弛함을 가질 틈을 허용치 않는 것도 인민통제의 일환이다. 春夏에 行刑을 금지하고<sup>26)</sup> 褒賞과 救恤<sup>27)</sup>을 실시하는 한편 秋冬에 엄격한 행형

編者가 이런 조작을 한 이유는 時則訓의 편찬 당시에도 여전히 九月除道와 十月成梁이 현실적 관행으로 유지된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바로 그 점에서도 우리는 時則訓이 十二月紀의 기본정신을 고스란히 간직, 계승하기는커녕 단순한 표피적 답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 「孟夏紀」, '命農勉作 無伏于都'.
- 23) 「孟春紀」, '無聚大衆 無置城郭'; 「孟夏紀」, '無起土功 無發大衆'; 「季夏紀」, '不可以興土功 不可以起兵動衆 無舉大事'.
- 24) 「管子」「四時」, '(冬)號令修禁徙民 令靜止'; 同, 「幼官」, '(冬)禁遷徙 止流民'; 「淮南子」「時則訓」, '(孟冬)禁外徙 閉門閭'. 유감스럽게도 十二月紀에는 徒民禁止의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혹시 脱漏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民의 왕래를 차단하는 것은 徒民禁止를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 25) 「孟秋紀」, '修宮室 附牆垣 補城郭'; 「孟冬紀」, '附城郭'.
- 26) 「仲秋紀」, '命有司 省囹圄 去桎梏 無肆掠 止獄訟'.
- 27) 「季春紀」, '賜貧窮 振乏絕 開府庫 出幣帛'.

을 실행하는<sup>28)</sup> 것 역시 緊張과 弛緩이라는 牧民 원칙의 일환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春夏에 投獄과 行刑을 금지하는 것은 보다 많은 노동력의 확보를 통해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 秋冬의 엄격한 형벌실시는 수확 이후의 풍성한 물적 기반과 농한기의 한가함에 의한 人民의 淫佚과 나태 및 절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sup>29)</sup> 국가권력의 자기파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년 동안의 통치를 緊張과 弛緩의 교대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일년 내내 德治 또는 法治 중 어느 한 쪽만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훨씬 탄력적이고 政令의 貫徹度 역시 높을 것이며 그것은 또한 四季의 순환 및 春生夏長秋收冬藏이라는 관념과도 합치되는 시의적절한 통치방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孟夏紀」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은 以上에서의 春德 秋刑의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 즉,

農乃升麥 …… 麥秋至 斷薄刑 決小罪 出輕繫.

이처럼 四月 孟夏에 비록 경미한 형벌에 대한 처단이기는 하나 行刑이 이루어지는例는 時令資料 中 거의 유일한 듯하다. 그러면 이러한 一見例外로도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해 高誘는 ‘是月陽氣盛於上 及五月陰氣伏於下 故斷薄刑 決小罪 順殺氣也’라 注함으로써 陰陽이론에 입각한 行刑으로 해석하지만 아무래도 억설에 불과한 듯하다. 그보다는 ‘農乃升麥’과 ‘麥秋至’가 冬麥의 收穫이라는 같은 내용의 중복이라는 점을 중시할 때 ‘斷薄刑 決小罪’는 ‘麥秋至’와 분리될 수 없는 모종의 因果 또는 同類相引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타당할 것 같고, 따라서 ‘麥秋至’ 하므로 ‘斷薄刑 決小罪’ 한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되어야 할 점은 ‘麥秋至’의 秋가 가을이라는 계절보다는 秋의 본

- 28) 「孟秋紀」, ‘命有司 修法制 繕囹圄 具桎梏 禁止姦 慎罪邪 務搏執 命理 瞳傷察創 視折審斷 決獄訟 必正平 戮有罪 嚴斷刑」; 「仲秋紀」, ‘命有司 申嚴百刑 斬殺必當 無或枉橈 枉橈不當 反受其殃’.
- 29) 「管子」「四時」, '(秋)居不敢淫佚 其事 號令毋使民淫暴'; 同, 「幼官」, '捕姦遁得盜賊者 有賞'; 同, 「禁藏」, '秋行五刑 誅大罪 所以禁淫邪 止盜賊'; 「淮南子」「時則訓」, '(仲冬)急捕盜賊 誅淫泆之人'. 十二月紀 孟秋의 '禁止姦'도 翻금 하지만 以上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래 意味인 穀熟을 지칭한다는<sup>30)</sup> 것이다, 이와 덧붙여 같은 『呂氏春秋』의 용례가 입증하듯 고대 중국인들이 穀熟을 농작물의 死亡으로 인식했다<sup>31)</sup>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麥秋至’는 麥이 영글어 수확할 수 있는 시기, 즉 麥의 사망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麥熟, 즉 自然의 麥殺害와 行刑의 유사성이 ‘類似는 類似를 낳는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同種呪術의 상정을 충분히 가능케 할진대, 여기서의 行刑이 본래 穀物이 잘 의도록, 바꾸어 말해 적절히 사방에 이르도록 하기위한 同種呪術로서 거행된 牺牲에 대한 殺害儀式과 같은 원초적 豊穰呪術 속에서 연원했으리라는 추정은 별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다. 가령 「孟秋紀」에서 보이듯이 孟秋에 합당한 時令을 행하면 凉風이 불어 곡식이 잘 익지만 그렇지 않으면 介蟲이 곡식을 해치거나 五穀이 여물지 않는다는<sup>32)</sup> 것도 그러한 豊穰呪術의 후대적 변환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麥熟에 따른 孟夏의 行刑을 豊穰信仰과 관련된 同種呪術의 잔재라 볼 수 있을진대, 十二月紀가 秋季行刑의 원칙을 어기면서 굳이 夏季에 경미한 수준이나마 行刑 조항을 삽입한 것은 민중적 주술신앙의 전통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를 매개삼아 春夏의 지나친 弛緩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十二月紀의 내용에 일관하는 傳統主義가 겨냥한 현실적 효용성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에 의한 곡식 살해(즉, 穀熟)로 특징지워지는 秋季에 있어서의 嚴刑主義 역시 肅殺한 陰氣와의合一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牧民원리로서의 緊張의 실현과 같은 순수한 陰陽說의 이념적 구체화라기보다는 원초적

30) 秋는 본래 禾穂가 영글어 수확할 수 있는 모습을 象形하는 글자로서 계절의 의미는 없었다(陳奇猷, 『呂氏春秋校釋』, 一, pp.193-194). 아울러 戰國中期의 저작으로 판단되는(松本雅明, 『春秋戰國における尙書の展開』, 東京, 1966, pp. 425-432 참조)『書經』『盤庚』上에 穀熟을 含意하는 秋의 용례가 확인되는(‘若農服田力穡 乃亦有秋’) 점에 의거하면 戰國時代에도 秋季와 穀熟의 의미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麥秋至’의 시기가 孟夏일진대 여기서의 秋를 가을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1) 『呂氏春秋』「任地」, ‘五時見生而樹生 見死而獲死’. 이에 대해 高誘는 ‘見生 謂春夏種稼而生也 見死 謂秋冬獲刈收死者也’ 라 注하고 있다.

32) ‘行之是令 而涼風至三旬. 孟秋行冬令 則陰氣大勝 介蟲敗穀 戎兵乃來. 行春令 則其國乃旱 陽氣復還 五穀不實’.

同種呪術을 전제로 한 그 합리적 변형으로 이해하는 쪽이 타당할 듯싶다.<sup>33)</sup>

十二月紀의 저변을 貫流하는 이와 같은呪術의 관념은 「孟春紀」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도 간접적이나마 엿보인다. 즉,

無覆巢 無殺孩蟲胎夭飛鳥 無(捕)麝無(取)卵.

이처럼 동물의 번식기인 春季에 鳥獸의 알이나 새끼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무절제한 남획이 초래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같은『呂氏春秋』에

澤梁을 竭하여 고기를 잡으면 어찌 획득치 못하겠는가마는 (그렇게 되면) 明年에는 고기가 없다. 薦을 불질러 田獵을 하면 어찌 획득치 못하겠는가마는 (그렇게 되면) 明年에는 사냥할 짐승이 없다<sup>34)</sup>

라는 식으로 자연자원의 保護·管理가 장기적인 자원확보에 필수적임을 잘 묘사한 내용이 보인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어디까지나 위정자의 입장에서 반영하는 것일진대,呪術信仰에서 벗어나지못한 일반인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呂氏春秋』「應同」篇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써 그 이유가 설명되었을 것이다.

夫覆巢毀卵 則鳳凰不至 削獸食胎 則麒麟不來.

上記 인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戰國策』에서도 확인되는<sup>35)</sup> 점에 미루어보면 이는 『呂氏春秋』編者의 창안이 아니라 先秦시대의 관용적 俗諺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上記 내용은 古代法의 연원인 터어부(taboo)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祥瑞롭지 못한 불경행위로서 禁忌

33) 十二月紀에는 이런 주장에 꼭 들어맞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지만 十二月紀의 陰陽五行說과 軌를 함께하는 『春秋繁露』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서술은 그 일단을 제공한다. 同, 「四時之副」, '天之道 春暖以生 夏暑以養 秋清以殺 冬寒以藏。聖人副天之所行以為政 故以慶副暖而當春 以賞副暑以當夏 以罰副清而當秋 以刑副寒而當冬'；同, 「人副天數」, '春生夏長 百物以興 秋殺冬收 百物以藏。'

34) 『呂氏春秋』, 「義賞」.

35) 『戰國策』「趙策」4, '有覆巢毀卵而鳳皇不翔 削胎焚夭而麒麟不至'.

視되던 것이 점차 관습으로 정착되고 훗날에는 雲夢秦簡의 田律 中 '(春 2 월에는) 어린 짐승, 어린 새와 알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금한다'<sup>36)</sup>라는 類似 조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연자원의 保護·management를 위한 강제적 禁令으로서 法令化되었을 것이다. 다만 前記한 「孟春紀」와 「應同」의 관련 가능성에 의거할 때 적어도 十二月紀의 編者는 法的 강제력보다는 民에 의숙한 呪術의 관념에 호소함으로써 자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除道 역시 그것이 본래 異神의 저주로 더럽혀진 道路를 祓清하는 呪術 행위<sup>37)</sup>였음을 감안할 때 民의 呪術의 공포심에 호소하여 그의 무리없는 집행이 기대되었음직도 하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十二月紀는 전통적 습속을 매개삼아 새롭게 도래할 통일천하질서의 실현을 무리없이 관철시키고자 했다고 하겠는데 그러한 전통성은 祭祀 중시라는 측면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十二月紀에 기재되어 있는 一年間의 行事 중에는 祭儀관련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上帝에 대한 祭祀가 거의 每月 거행되다시피 할<sup>38)</sup> 뿐만 아니라 山林藪澤이나 山川百原을 주재하는 自然神에 대한 祭禮도 적지않게 확인되며,<sup>39)</sup> 아울러 瘦鬼의 驅逐을 위한 驅祭 등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sup>40)</sup> 그 밖에 公社와 門間에 대한 祭祀의 例<sup>41)</sup>도 보인다. 祭禮의 정치적 효용성을 짐작케 하는 이 현상은 일단 呪術的·神政의 世界觀

36)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 文物出版社, 1978, p.26.

37) 白川靜, 「漢字の世界」 1, 東京, 1976, 第4章, 「異神の怖れ」 참조.

38) 「孟春紀」, '天子乃以元日祈穀於上帝'; 「仲春紀」, '玄鳥至 至之日 以太牢祀於高禫' (高禫祭 역시 上帝에 대한 祭祀이다. 이에 대해서는 池田末利, 「高禫信仰の成立」, 『中國古代宗教史研究』, 東京, 1981 참조); 「季春紀」 '是月也 天子乃薦鞠衣于先帝'; 「仲夏紀」, '大雩帝 用盛樂'; 「季夏紀」, '令民無不咸出其力 以供皇天上帝 名山大川 四方之神 以祀宗廟社稷之靈 爲民祈福'; 「仲秋紀」, '五者備當上帝其享'; 「季秋紀」, '是月也 大饗帝 詣犧牲 告備于天子'; 「孟冬紀」, '是月也 大飲烝 天子乃祈來年于天宗'; 「季冬紀」, '乃命太史 次諸侯之列 賦之犧牲 以供皇天上帝社稷之享 賦之犧牲 以供山林名川之祀 凡在天下九州之民者 無不咸獻其力 以供皇天上帝社稷廟山林名川之祀'.

39) 「孟春紀」, '命祀山林藪澤'; 「仲夏紀」, '命有司 爲民祈祀山川百原'; 「季冬紀」, '乃舉行山川之祀 及帝之大臣 天地之神祇'. 註 38 아울러 참조.

40) 「季春紀」, '國人儺(命國儺) 九門肆禳 以畢春氣'; 「仲秋紀」, '天子乃儺 禮佐疾 以通秋氣'; 「季冬紀」, '命有司大儺 旁磔 出土牛 以送寒氣'.

41) 「孟冬紀」, '大割 祀于公社及門間'.

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그에 걸맞게 十二月紀의 天子는 上帝를 비롯한 여러 神들의 意志 및 자연질서를一身에 체현한 巫祝의 呪術王 또는 司祭王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낸다. 가령 天子가 적정한 달에 잡거나 수확한 물고기와 곡식을 먼저 맛보고 이를 宗廟에 바쳐 祭祀하거나 또는 穀熟을 기원하는 행위<sup>42)</sup> 등은 그러한 天子의 巫祝의 성격을 응변한다.

그러나 十二月紀에 일관하는 이와 같은 呪術的·神政的 세계관과 그 구체 양태로서 天子의 主宰 下에 거행된 국가적 규모의 祭儀가 결코 원시적 촌락공동체 단계에서 실현되었을 古朴한 순수성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없음은 거의 자명하다. 앞서도 예상했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적 인민 지배를 위한 虛構 以上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祭禮의 본질은 우선 藉田儀禮의 부활에서 확연히 입증된다.

西周末 宣王期에 공식 폐지된 藉田儀禮가 본래 邑共同體 단계에서 土地神과 穀神에 대한 稗盛 마련을 위해 族長의 인솔 下에 이루어진 神田에서의 氏族的 共耕에서 훗날 古代王權이 주술신앙을 매개로 기충사회를 착취하기 위한 허구적 儀式으로 변질되었음<sup>43)</sup>은 대체로 수긍되는 바이다. 따라서 十二月紀에서 孟春에 天子가 諸侯 등을 거느리고 帝藉田에서 藉田儀禮를 거행하고 季秋에 帝藉田의 수확물을 神倉에 貯藏하는 것<sup>44)</sup>은 外見上 (따라서 一面) 巫祝의 首長의 豊穰呪術儀式과 上帝에 대한 稗盛마련을 위한 帝藉田 및 神倉의 운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帝藉田이 民의 요역 노동으로 운영되리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기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본질적 의도는 天子의 주술적 권위와 祭儀를 매개로 한 노동력 착취를 겨냥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祭祀를 매개로 하는 인민지배의 지향성은 「季冬紀」의 다음 두 事例에서 보다 명료하게 입증된다. 즉,

- 
- 42) 「孟春紀」, '天子乃以元日祈穀於上帝'; 「季春紀」, '天子焉始乘舟 蘆鮑于寢廟 乃爲麥祈實'; 「孟夏紀」, '農乃升麥 天子乃以旣嘗麥 先薦寢廟'; 「仲夏紀」, '是月也 天子以旣嘗黍 羞以含桃 先薦寢廟'; 「孟秋紀」, '是月也 農乃升穀 天子嘗新 先薦寢廟'; 「季秋紀」, '是月也 天子乃以犬嘗稻 先薦寢廟'; 「季冬紀」, '是月也 命漁師始漁 天子親往 乃嘗魚 先薦寢廟'.
- 43) 谷口義介, 「西周時代の藉田儀禮」, 『中國古代社會史研究』, 京都, 1988 (以下 谷口義介의 논문의 전거는 同書이므로 생략).
- 44) 「孟春紀」, '是月也 天子乃以元日祈穀於上帝 乃擇元辰 天子親載耒耜 措之參于保介之御間 率三公九卿諸侯大夫躬耕帝藉田 天子三推 三公五推 卿諸侯大夫九推'; 「季秋紀」, '藏帝藉之收於神倉'.

- ① 乃命四監 收秩薪柴 以供寢廟及百祀之薪燎.  
 ② 乃命太史 次諸侯之列 賦之犧牲 以供皇天上帝社稷之享 乃命同姓之國 供寢廟之芻參 令宰歷卿大夫至于庶民土田之數 而賦之犧牲 以供山林名川之祀 凡在天下九州之民者 無不咸獻其力 以供皇天上帝社稷寢廟山林名川之祀.

上記하듯이 각종 祭祀에 소용되는 薪燎와 犧牲을 賦稅로서 징수한다는 것은 祭禮비용조달의 명목으로 聚斂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②에서 '凡在天下九州之民者 無不咸獻其力 云云' 하는 바와 같이 祭祀를 위해서라면 民은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것은 祭祀를 매개로 한 稹취를 한껏 보장하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렇게 볼 때 十二月紀에 제시된 성대하고 빈번한 국가적 祭儀는 주술신앙에 호소하여 일반인민을 별다른 저항없이 지배하기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稅役筹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十二月紀의 編著가 시종 고수한 기본적 지향이 전통적 가치나 관습을 매개로 한 인민지배의 구현이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十二月紀의 전통적·복고적 경향은 가령 荀子의 '天人之分'으로 귀결되는 先秦諸子의 합리주의와는 명백히 배치되지만, 또 한편 荀子 역시 祈雨祭나 占卜의 인민지배에서의 효용성을 인정한 것<sup>45)</sup>을 감안하면 그것은 思想이 現實과의 융합·타협을 지향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戰國末이라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여 편찬된, 현실적 효용성을 갖는 國家經營論으로 평가되는<sup>46)</sup>『管子』經言類中에도 十二月紀의 전통성과軌를 같이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즉, 經言類七篇 중 맨 앞에 위치하는 「牧民」에서 民間의 주술신앙을 정치영역에 수용해야만 효율적인 민지배를 기할 수 있다고 한 서술<sup>47)</sup>이 바로 그것인데, 十二月紀와 「牧民」의 이와 같은 공통된 인식은 결국 戰國末統一을 준비하는 思想界的潮流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경직된 사상적 순수성을 추구했던 戰國諸子가 탄력적이고 현실성 있는 통치원리 구상 쪽으로

45) 『荀子』, 「天論」, '日月食而救之 天旱而雩 卜筮然後決大事 非以爲得求也 以文之也 故君子以爲文 而百姓以爲神'.

46) 町田三郎, 『秦漢思想史の研究』, pp. 48-50.

47) '順民之經 在明鬼神 祇山川 敬宗廟 恭祖舊 ..... 不明鬼神則陋民不悟 不祇山川 則威令不聞 不敬宗廟則民乃上校 不恭祖舊則孝悌不備'.

방향전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十二月紀가 실현가능한 통치大綱의 면모를 갖추게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十二月紀는 주술신앙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적 가치 및 관행을 매개고리로 삼아 民과의 접점을 넘기도록 보다 효율적인 인민지배를 목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향을 담은 十二月紀는 인민지배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성을 가지며 그것이 時令의 형식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 次章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 Ⅱ. 실천성과 이념성

十二月紀가 『呂氏春秋』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그것이 어떤 현실적 목적 下에 편찬되었는가, 다시 말해 十二月紀가 과연 인민지배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도록 의도되었는가를 해명하는 일은 十二月紀의 성격은 물론이려니와 『呂氏春秋』 편찬의 시대적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종래 연구는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이렇다할 해명도 없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그것이 인민을 직접대상으로 반포될만한 구체적 政令인지 또는 그러한 政令의 上位개념으로서 설정, 제시된 기본적 통치원리인지 모호한 설정이다.

이처럼 十二月紀의 명확한 位相이 정립되지 않은 이유는 우선 十二月紀의 내용 자체가 人民教導要領으로서의 제도적 구체성과 先秦諸子思想의 절충적 결합물이라는 이념성을 공유한다는 데 있다. 즉, 十二月紀의 조항들이 매우 구체적 法令의 형태를 떨 뿐만 아니라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일부 조항과 흡사한 내용이 睡虎地秦律이나 青川秦律에서 확인될 정도로 戰國時代에 실제 운용된律令과 일치되는 한편, 十二月紀類의 時令을 전국말의 시대적 요청 속에서 구상된 ‘統一原理探求의 一試論’<sup>48)</sup> 이라거나 또는 ‘五行思想에 附屬하는 一觀念’<sup>49)</sup> 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타당한 만큼 十二月紀의 이념성 역시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十二月紀의 실체를 모호하게 만든 보다 근본적 이유는 十二月紀 등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時令이라는 호칭이 그 어휘의 개념 또는 含意 및 그 시대

48) 町田三郎, 「時令說について」, 『文科紀要』(東北大學教養部) 第9集, p. 63.

49) 町田三郎, 「時令說について」, p. 51.

적 변화(와 그에 따른 편차)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원초적 단계의 農事暦임이 분명한『詩經』의 七月詩와 그 발전 형태로서의 夏小正, 그 다음 단계로 여겨지는『尚書』의「堯典」,<sup>50)</sup>『管子』의 이른바 時令關係諸篇, 本稿에서 다루는 十二月紀, 그리고 漢代 이후 편찬된「時則訓」,「王居明堂禮」 및『禮記』의「月令」등이 각기 相異한 시대배경 및 편찬의도 下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당연 그에 상응하여 기능과 성격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둥뚱그려 時令이라 통칭됨으로써 각각의 특수성이 거의 간파되거나 무시되어왔던 것이다. 물론 이들 사이에는 내용 및 관념상의 유사성이 상당히 확인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과 별개의 차원으로 각 時令에 내재하는 시대적 특수성과 편찬의도의 개별성이 간파될 수는 없다.

時令에 대한 종래연구의 문제점을 이와 같이 정리해보건대 十二月紀의 구체적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종래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時令의 전개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十二月紀를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十二月紀와 그 전후의 時令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리라 본다. 그러면 戰國 이전에 성립된 초기의 時令과 十二月紀의 차이부터 검토해보자.

우선『詩經』『幽風』의 七月詩는 그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sup>51)</sup> 그 내용이 邑共同體를 배경으로 하는 一年 간의 農村生活을 月別로 묘사한 民謡 형태의 農事暦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異論이 없는 것 같다.<sup>52)</sup> 실제로 이 七月詩에는 자연의 미묘한 변화에 맞추어 農耕과 祭禮를 비롯한 농민의 歲時생활이 영위되는 모습이 목가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지배자의 입장은 담은 教訓의 내용이나 이른바 觀象授時의 요소

50) 「堯典」의 時令관련부분은 五行說의 영향도 보이지 않고 十二月紀와 같은 복잡한構成도 없어 七月詩에 보다 가까운 순수 農事暦으로 해석되고 있다(金谷治,『管子の研究』, p. 228; 松本雅明,『春秋戰國における尚書の展開』, p. 249). 다만 金谷治는 「堯典」의 成立을 孟子 이후로 보는데(同, p. 228) 비해 松本雅明은 孟子 이전의 戰國前期라고 논증하고 있다(同, pp. 240-252 참조).

51) 가령 孫作雲 등의 西周初期說, 陸侃如의 西周中期說, 貝塚茂樹 등의 西周末期說, 松本雅明 등의 春秋中期說, 郭沫若 등의 春秋末期說 등 다양한 異論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谷口義介, 「幽風七月の社會」 및 金谷治,『管子の研究』, p. 251의 註 3 참조.

가 보이지만,<sup>53)</sup> 詩의 풀격을 이루는 年中行事의 대부분이 고대농민의 생활 감정 및 관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점에 의거한다면 七月詩는 農民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순수한 실용적 농사력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이 集圃共耕이나 또는 收穫祭와 같은 祭禮의 場에서 불린<sup>54)</sup> 民謡의 형태로 정착된 것도 농민의 관습과의 밀착을 전제로 해야 이해가능하다.

七月詩가 농민의 오랜 경험과 관습을 토대로 형성된 민중적 농사력이라면 그 발전형태로서의 夏小正이야말로 명실상부한 觀象授時의 曆書로서 爲政者로부터 발표된 時令의 본격적 시작이라 할 것이다. 農民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담고있는 七月詩와 달리 夏小正이 月別로 動植物 및 氣象 · 星象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자연현상과 그에 상응한 農業 · 牧畜 · 漁獵 · 採集 등의 日程을 극히 사무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나열하는 형식으로부터 그것이 순수한 實用曆임을 실감할 수 있다. 夏小正이 十二月紀 編纂時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었음은 양자의 節候 관련내용이 매우 흡사한<sup>55)</sup> 것으로도 입증되지만 또 한편 거기 기재된 자연현상에 動植物의 변화가 가장 많고 星象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가능한 것들이라는 사실은 夏小正이 觀象授時의 曆書로서는 원시 단계의 것<sup>56)</sup>임을 시사한다. 현재 『大戴禮記』에 수록되어있는 夏小正是 本文과 解說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원래 독립된 기록물이었던 本文이 현재의 형태로 정착된 것은 戰國時代인 듯하며 또한 그 原形의 성립은 春秋時代 또는 그 이전까지로 소급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sup>57)</sup> 말하자면 夏小正是 七月詩와 마찬가지로 씨족적 읍공동 체질서를 토대로 하는 殷周 城邑國家를 배경으로 기능한 實用曆이었다.

52) 물론 津田左右吉같은 이는 이 詩에 農民생활과 직결되는 祭祀와 娛樂, 農民들의 勞動의 고통과 수확의 환희 등의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고 年中行事도 매우 혼란, 중복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詩가 農민 스스로 만들어 부른 民謡나 農事曆이 아니라 宮廷의 樂人이 연주한 詞章이라 보고 있기도 하다(同, 「幽風七月の詩について」, 同著 『津田左右吉全集』 16, 東京, 1965). 그러나 이 견해는 별로 지지받지 못하는 것 같다.

53) 谷口義介, 「幽風七月の社會」, p. 84; 金谷治, 『管子の研究』, p. 226.

54) 谷口義介, 「幽風七月の社會」, p. 80; 白川靜, 『中國古代の民俗』, 東京, 1980, p. 246.

55) 島邦男, 『五行思想と禮記月令の研究』, pp. 61-62의 表 참조.

56) 夏緯瑛 · 范楚玉, 「夏小正及其在農業史的意義」, 『中國史研究』 1979-3, p. 143.

이러한 夏小正의 原形이나 『國語』에 그 편린을 남기고 있는 夏令이 時令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春秋後期라고 하는 견해<sup>58)</sup>가 타당하다면 時令의 지배의 종언은 城邑國家의 봉괴 및 씨족질서의 해체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夏令의 기능상실요인으로 손꼽히는 권력자의 무분별하고도 빈번, 가혹한 要역징벌<sup>59)</sup>은 戰國의 군주권으로의 지향의 일환이며, 또 한편 '先王之教'<sup>60)</sup>로 일컬어진 그 夏令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城邑國家를 지탱해온 관습법으로서의 禮의 봉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城邑國家에서 領土國家로의 이행이 수반한 지역통합과 사회의 복잡화는 폐쇄적 읍공동체 집단을 단위로 영위되어온 農事중심의 관습법으로서의 전통적 時令에 대신하여 全통치지역에 걸쳐 일원적으로 관철될만한 다양하고 강제적인 제도 및 법령의 운용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는 十二月紀가 순수 農事曆으로서의 七月詩나 夏小正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 中 적지않은 부분이 教令의 성격을 갖는 전통적 時令과는 사뭇 판이하게 '無云云' 하는 禁令의 형태를 띠는 것만으로도 여실히 증명된다. 그렇다고 해서 十二月紀가 단지 복잡성과 강제성을 가미했을 뿐 전통적 時令의 실천적 기능을 그대로 계승, 온존한 實用曆이라는 말은 물론 아니다. 시령적 지배의 特정이 시대적 필연이었다면 실천을 위한 時令이란 이미 존립기반을 상실한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十二月紀를 포함한 戰國 이후의 時令이란 이미 봉괴된 시령적 지배의 정당성을 매개로 한 현실비판 또는 현실개혁의 原理이거나, 전통적 時令에 대체될만한 실천적 제도 및 법령을 도출하기 위한 이념적 산물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하 그 점을 검토해 보자.

春秋末 아래의 先秦文獻에는 시의적절한 民力동원을 비롯하여 四季의 리듬에 순응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수다하게 확인된다. 예컨대 『左傳』의 春秋末 記事에 보이는 '爲政事 廉力 行務 以從四時'<sup>61)</sup>를

57) 白川靜, 「中國古代の民俗」, p. 251; 谷口義介, 「夏小正註釋」, pp. 283-284.

58) 谷口義介, 「春秋時代の時令」, pp. 279-280.

59) 上同.

60) 『國語』「周語」中, '故先王之教曰 雨畢而除道 水涸而成梁 草木節解而備藏 隕霜而冬裘具 清風至而修城郭宮室. 故夏令曰 九月除道 十月成梁.'

61) 『左傳』, 昭公25年.

비롯하여 『戰國策』의 ‘四時治政 不亂不逆’,<sup>62)</sup> 『管子』의 ‘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sup>63)</sup>나 ‘象四時之行 以治天下’<sup>64)</sup> 등이 그런 부류이다. 이런 주장의 빈번한 국가권력의 무절제한 인민착취의 현실을 반증하는 동시에 四時의 추이에 합일하는 政令 시행의 당위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런 原論的 또는 理念的 주장이 戰國 이후 時令資料 편찬의 출발점을 이룬다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그런 주장들이 시대가 내려올수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儒家 쪽 문헌의 경우 『論語』, 『孟子』, 그리고 『荀子』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은 그 好例가 아닐 수 없다.

① 道千乘之國 使民以時。<sup>65)</sup>

② 農事의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좁은 그물을 용덩이에 넣지 않으면 魚鱉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를 때맞추어 山林에 넣으면 材木을 이루 다 쓸 수 없다.<sup>66)</sup>

③ (A) 養育生長이 때맞으면 六畜이 번성하고 殺生이 때맞으면 草木이 번성하며 政令이 때맞으면 百姓이 하나가 되고 賢良한 이들이 歸服한다.

(B) 聖王의 制度에서 草木이 꽂피고 열매맺을 때 도끼를 산림에 넣지 않는 것은 그 生함을 天折하지 않고 그 成長함을 斷絕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큰 자라와 악어, 魚鱉, 미꾸라지, 두렁허리가 산란할 때 그물과 毒藥을 漥에 넣지 않음은 그 生함을 天折하지 않고 그 成長함을 단절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春耕 夏耘 秋收 冬藏의 四者가 그 때를 잃지 않으므로 五穀이 결핍되지 않고百姓은 먹을 것에 여유가 있고 池沼와 川澤(에서의 漁撈 행위를) 때맞추어 엄격히 禁止하므로 魚鱉이 풍족하여百姓은 사용하는 데 여유가 있고 벌채와 養長이 그 때를 잃지 않으므로 민동산이 없고百姓은 材木에 여유가 있다.<sup>67)</sup>

上記하듯 『論語』의 주장은 극히 간단하고 원론적이지만 『孟子』는 그보

62) 『戰國策』, 「秦策」三.

63) 『管子』, 「牧民」.

64) 『管子』, 「版法解」.

65) 『論語』, 「學而」.

66) 『孟子』, 「梁惠王」上.

67) 『荀子』, 「王制」.

다 구체적이고 ③의 『荀子』에 이르면 그 내용은 十二月紀나 秦律의 관련 조항을 방불할 만큼 매우 정밀해진다. 이러한 추이는 諸子의 주장이 단순한 현실비판에서 구체적 대안제시를 통한 현실개혁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戰國 時令資料의 형성경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즉, 戰國 이후의 時令이란 이같은 이념적 구체화의 결과물이라는 게 필자의 소견인데 時令의 직전단계로 판단되는 ③의 내용은 그것을 입증하는 것 같다.

③은 原理에 해당하는 (A)부분과 그 구체화된 형태로서 時令을 방불하는 (B)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의 글자는 앞서 인용했던 『左傳』 등의 서술이나 또는 上記한 『論語』의 문장이 지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政令은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戰國 時令에 상당하는 (B)가 이런 (A)의 이념적 당위성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진대 戰國 時令이란 곧 '政令은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기본명제를 구체적 근거로써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로서 배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上記한 ③에서 (A)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B) 전체를 聖王의 제도로 설정하는 이른바 復古主義的假託의 논증방식이 채택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戰國 時令에서 時令의 발포주체로서 빈번히 聖王이나 聖人이 등장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 戰國 時令이 전통적 時令의 형식을 답습함으로써 의견상 전통회귀를 지향하는 그 자체 역시 復古主義의 假託의 논리로써 시의적절한 政令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戰國 時令의 형성에 관한 필자의 이같은 추정은 上記한 ③과 유사한 구성이 『管子』의 時令資料 가운데 그 성립시기가 앞서는 「四時」篇에서도 확인된다는 근거로써 보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四時」는 '令有時…唯聖人知四時...'나 '聖王務時而寄政'을 글자로 하는 原論의 내용과 '然卽春夏秋冬將何行'으로 시작되는 四季의 구체적 政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이념적 구체화의 추이에 의거하면 後者는 前者の 당위성을 '聖王의 例'로서 假託된 時令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後者の 내용 역시 실천적 法令 자체가 아니라 그에 上位하는 原理였다. 그리하여 이같은 이념적 구체화의 과정은 十二月紀에 이르러 완결된 月令 형식으로 귀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형성경위에서 볼 때 戰國 이후의 時令은 '政令은 시의적절해야 한다'라는 인식의 이념적 당위성을 실제적 제도 및 법령으로 구체화

하려는 의도에서 배태된 현실개혁의 원리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그것이 전통적 時令의 계승발전 형태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시의적절한 政令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 時令의 형식을 답습함으로써 이미 존립기반을 상실한 時令의 질서로의 회귀를 외면적으로나마 표방한 것은 그의 이념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十二月紀를 포함한 戰國 時令의 개별 조항이 설사 구체적 法令의 형태를 띈다 해도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原理일 뿐 실천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다시 十二月紀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를 검증해보자.

필자는 앞에서 戰國 이후 강제적 禁令이 전통적 時令을 대신해나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선 十二月紀와 실제 禁令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十二月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青川出土 秦律의 다음 내용을 재검토해보자.

9월에는 대대적으로 除道하고 水路를 補修한다. 10월에는 다리를 놓고 陂堰과 堤防을 修築하여 河道의 소통을 이롭게 한다. 잡초가 적고 설사 除道할 때가 아니라도 (道路에) 구덩이가 있거나 褐손되어 다닐 수 없으면 기회를 살펴 除道한다.<sup>68)</sup>

앞서 지적했듯이 이 律令은 전통적 時令에 보이는 歲時관습인 ‘九月除道 十月成梁’이 戰國 이후 강제적 律令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상기 내용을 十二月紀 季春의 ‘修利隄防 導達溝瀆 開通道路 無有障塞’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뒷부분의 예외규정이다. 이런 차이와 아울러 十二月紀 쪽의 내용이 I章에서 언급했듯이 弛緩·開通이라는 이념성을 강하게 동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十二月紀는 세부의 예외규정까지를 동반한 현실적 禁令이 아니라 그에 上位하는 理念性질은 原理라고 해석된다. 十二月紀와 실제적 律令 사이의 이같은 차이는 다음과 같은 睡虎地秦簡의 田律의 내용에서 재확인된다.

68) ‘九月，大除道及除澗，十月爲橋 脩陂隄 利津□。鮮草 雖非除道之時 而有陷敗不可行 相爲之□□’(이 해석은 李昭和, 「青川出土木牘文字簡考」, 『文物』1982-1, p. 27에 의거했음).

春 2월에는 山林의 목재를 벌채하거나 隄水를 막는 것을 금한다. 여름이 되기 전에 草를 태워 비료를 만들거나 갓 싹튼 식물, 어린 짐승, 어린 새와 알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금하며, 魚鱉의 득살 및 함정과 그 물로 鳥獸를 (포획하는 것을) 금하되, 7월이 되면 이 禁令을 해제한다. 다만 불행히 사망자가 있어 棺槨用 재목을 벌채할 경우는 계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sup>69)</sup>

이 법령은 十二月紀의 孟春·仲春·季春에 보이는 동식물 보호규정<sup>70)</sup>과 仲夏紀의 '無燒炭', 그리고 季夏紀의 '是月也 樹木方盛 乃命虞人入山行木無或斬伐'을 종합한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十二月紀와 거의 일치된 내용을 담고있다. 그만큼 十二月紀의 내용이 현실의 법령과 진배없을 정도로 구체적임을 실감케하는데, 그러나 위의 법령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보이듯이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이처럼 전국시대의 法令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법적 규제가 매우 철저했음을 반증하는 한편, 十二月紀가 실제의 法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통치원리<sup>71)</sup>임을 입증하는 뚜렷한 근거이기도 하다.

上記한 睡虎地 秦律의 내용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十二月紀가 이와 유사한 山林叢澤에 관한 보호, 금지 조항들을 每月 따로따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모두 일괄하여 春夏季 동안을 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방식은 漢代의 실용적인 月令인 四民月令에서도 '正月부터 季夏가 끝날 때까지 竹木을 伐採하지 말라'<sup>72)</sup>고 규정한 것과도 흡사하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時令의 구체적 施行 행태일 것이다. 기실 十二月紀의 月別 금지조항들에는 중복이 보이고<sup>73)</sup>, 또한 秦律에서 2월부터 어린 鳥

69) 睡虎地秦墓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 p. 26.

70) 「孟春紀」, '禁止伐木 無覆巢 無殺孩蟲胎夭飛鳥 無廢無卵'; 「仲春紀」, '無竭川澤 無漑陂池 無焚山林'; 「季春紀」, '田獵罿弋 置罘羅網 倾獸之藥 無出九門, 是月也 命野虞 無伐桑柘'.

71) 또 한편 이와 같은 실제 법령과의 유사성을 중시해보면 十二月紀는 전국시대에 실행된 정책 조치를 종결하여 제정된(楊寬, 『戰國史』, 上海 人民出版社, 1980, p. 62) 이상적 통치의 典範이라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72) 渡部武譯注, 『四民月令』, 東京, 1987, p. 26.

73) 「孟春紀」의 '禁止伐木'과 「仲春紀」의 '無焚山林', 「季春紀」의 '命野虞 無伐桑柘', 그리고 「仲夏紀」의 '無燒炭', 「季夏紀」의 '乃命虞人入山行木 無或斬伐'은 모두 山林의 채손을 금지하는 동일내용이다.

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과연 十二月紀에서처럼 孟春에만 이를 금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내용상의 重複은 農事期인 孟春·仲春·孟夏·季夏에 거의 반복된 壴역금지 조항<sup>74)</sup>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壴역금지가 人民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 支配者에 대한 것이라 볼 때 이 역시 十二月紀가 民을 직접 대상으로 발포될 만한 時令이 아니라 그에 上位하는 통치원칙으로 제시된 것임을 확실시해준다. 또한 仲春·仲夏·仲秋에 각기 보이는 ‘養幼少’, ‘養壯穀’, ‘養衰老’에는 自然界와 人間界의 합일이라는 지향에 의거한 작위적 안배가 뚜렷하게 인정된다.

以上에 의거해 볼 때 戰國 以後의 時令 가운데 가장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十二月紀조차도 인민을 대상으로 반포될 만한 실천적 政令이 아니라 는 사실은 거의 명백하다. 오히려 그것은 누누히 지적했듯이 실천적 政令 반포의 당위성을 역설한 철학적 原理<sup>75)</sup>나 또는 인민통치의 기본원칙으로 볼 수 있다. 기실 『呂氏春秋』의 編者들이 十二紀를 八覽·六論의 실천성 보다 우위에 서는 原論으로 설정했다<sup>76)</sup>는 근거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十二紀의 首篇인 十二月紀가 단순한 政令 차원에서 입안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통치원리로서의 十二月紀에 대해 종래 그 실체와는 동떨어진 時令이라는 호칭이 적용되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季冬紀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리라 여겨진다.

天子乃與卿大夫飭國典 論時令 以待來歲之宜.

74) 「孟春紀」, ‘無聚大衆 無置城郭’; 「仲春紀」, ‘無作大事 以妨農功’; 「孟夏紀」, ‘無起土功 無發大衆’; 「季夏紀」, ‘不可以興土功 不可以合諸侯 不可以起兵動衆。無舉大事 以搖蕩于氣。無發令而干時 以妨神農之事……舉大事則有天殃’.

75)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町田三郎이 『管子』나 『呂氏春秋』의 時令을 실천에서 원리로 비약한 哲學 자체라고 주장한(同, 『秦漢思想史の研究』, p. 48) 것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十二月紀가 현실적 효용성과 무관한 관념론은 결코 아니라 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76) 赤塚忠에 의하면, 『呂氏春秋』는 十二紀를 原論, 八覽을 그 實踐論, 六論을 八覽의 補備로 각각 삼아 조작되었다고(同, 『呂氏春秋の思想史的意義』, 『日本中國學會報』 8, 1958, p. 3) 하는데, 이는 町田三郎도 그에 동의하듯이(同, 『管子幼官攷』, 『集刊東洋學』 1, 1959, p. 21) 매우 타당한 것 같다.

上記 내용에 보이는 ‘論時令’은 현재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時令이라는 어휘의 최초의 용례인데 十二月紀를 時令으로 일컬어온 기존의 오류는 十二月紀와 위의 時令을 동일 수준으로 이해하여 양자를 일치시킨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十二月紀의 내용 속에 ‘時令을 論한다’는 귀절이 있다는 것은 이미 十二月紀 자체가 時令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論時令 以待來歲之宜’는 時令이 해마다 상황에 따라 수정될만한 보다 구체적인 法令이라는 해석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데, 과연 통치의 大綱으로 규정되는 十二月紀가 그러한 時令과 동일 차원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이렇게 볼 때 十二月紀 등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어온 時令이라는 호칭은 불식되어야 마땅하며, 上記 인용에 의거하는 한 ‘時令’<sup>77)</sup>은 十二月紀의 大綱을 구체화한 法令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국 이후에 夏令이나 夏小正의 기능과 형식을 계승한 ‘時令’이 완결된 형태로서 따로이 존재했을 리 만무하다는 근거에서는 上記의 ‘時令’ 역시 실체없는 허구를 假想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편 그것을 時宜에 합당한 法令 전체를 총칭한 용어라 해석한다면 현실적 기반을 갖는 것이 된다.

十二月紀와 ‘時令’의 관계를 以上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上記한 季冬紀의 귀절과 상관성을 갖는다고 여겨지는 孟春紀의 다음 내용에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즉,

(天子가 迎春儀式을 마치고 돌아와) 乃賞公卿諸侯大夫於朝. 命相布德和令, 行慶施惠下及兆民.

上記 서술에 따르면 孟春에는 天子가 行賞을 실시한 뒤 相으로 하여 금 德을 베풀고 令을 宣布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아하게도 令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孟春에 선포되는 이 令은 그 前月인 季冬에 다음 해를 위해 확정한 ‘時令’이 아닐까? 앞서 인용한 秦律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구체적 法令으로서의 ‘時令’이라는 것이 每月 발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孟冬에 먼저 이듬해에 시행할 ‘時令’을 확정한 뒤

77) 以下에서는 구체적 法令으로서의 時令을 ‘時令’으로 표시함으로써 十二月紀를 비롯한 戰國 이후의 時令資料에 대한 기존의 통상적 호칭으로서의 時令과 구별하기로 한다.

한 해가 시작되는 孟春에 그것을 선포한다고 해석하는 쪽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같은 추정의 타당성은 上記 인용과 거의 흡사한 『管子』의 다음 내용으로써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孟春之朝 君自聽朝 論爵賞校官 終五日…… 正月之朔 百吏在朝 君乃出令  
布憲于國。<sup>78)</sup>

上記하듯이 一年동안 시행할 法令이 歲首인 正月에 君主가 모든 관료를朝廷에 소집한 가운데 반포되었다면 十二月紀의 孟春에 반포된 令은 季冬에 확정된 ‘時令’ 그것이었다 보아 대과 없을 터이다. 다만 十二月紀는 天子를 신비한 命術王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실무행정을 총괄하는 相이 ‘時令’을 宣布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의 논거로써 재확인된 바와 같이 十二月紀는 실천적 律令 次元의 ‘時令’이 아니라 그에 上位하는 이념적 원리였다. 말하자면 ‘時令’ 반포의 이념적 당위성 제시라는 戰國時令의 근본취지가 十二月紀에도 관철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十二月紀의 位相을 이처럼 戰國時令의 연장선 上에서 파악하는 視角만으로는 十二月紀에 내재한 시대적 특수성과 그 편찬 의도의 개별성을 간과해온 종래연구의 오류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요컨대 十二月紀의 본질을 규정할 만큼 중요한 점은 그것이 통일원리를 담은 『呂氏春秋』의 핵심적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즉, 『呂氏春秋』가 천하통일에의 모색이라는 戰國最末期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신시대의 청사진일진대, 그 구체적 일환으로서 입안된 十二月紀가 月令 형식을 빌어 구상한 것 역시 이상적 통일천하질서였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통일지향의 시대성과 律令의 이념적 원리라는 兩大軸을 접합시켜보면 十二月紀의 실체는 결국 새로운 천하질서에서 구현되어야 할 律令의 토대를 이루는 統治의 大綱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律令의 근본원리이자 국가조직원리로서의 禮로 규정할 수 있다.<sup>79)</sup>

이처럼 뚜렷한 시대성과 지향성을 확보했던 十二月紀를 분수령으로 하여 時令은 현실비판(및 개혁)이나 통일지향의 원리로서의 그 존재의미를 상실한 채 급격히 형식화, 형해화되어간다. 가히 時令의 화려한 조락이라

78) 『管子』, 「立政」.

고도 일컬어질만한 이 경향은 특히 十二月紀 성립 이후 약 백여년이 지난 뒤 편찬된 『淮南子』의 時則訓을 통해 확인해 입증되리라 믿는다.

時則訓이 시대성과 실천적 지향성을 상실한 채 한낱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時令으로 전락한 근거는 그것이 十二月紀의 기본정신을 물이해한 표피적 담습<sup>80)</sup>에 불과하다는 점 못지않게 그와 동시에 당연한 귀결로서 이루어진 十二月紀에 대한 왜곡 및 변질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十二月紀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孟春에 相으로 하여금 '時令'을 반포케하는 것과 달리 時則訓에서는 天子가 四季의 各 孟月에 春令 · 夏令 · 秋令 · 冬令을 반포하고 있다.<sup>81)</sup> 이와 같은 변화는 漢代 이후 時令이 形骸化됨으로써 실천성을 상실한 형식적 儀禮로 전락하면서 거꾸로 보다 정교한 時令의 형식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구체적 法令 차원의 '時令'과 그에 上位하는 이념적 원리로서의 時令이 혼동된 결과 『淮南子』의 編者가 「時則訓」 그 자체를 '時令'으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같은 왜곡 현상은 가령 漢代 이후에 성립된 것이 확실시되는 『管子』「輕重己」篇에서도 天子가 四季의 初節, 즉 春始 · 夏始 · 秋始 · 冬始에 迎季儀禮를 거행한 뒤 四季의 時令을 반포하는 것에서 재확인된다.<sup>82)</sup> 특히, 예컨대 春始에 '發號出令曰 生而勿殺 賞而勿罰 罪獄勿斷 以待期年 云云' 하는 내용을 '天子之春令也' 라거나, 夏始의 時令에 대해 '天子之夏禁'이라 하는 것은 輕重己의 編者가 이 篇의 내용을 '時令' 그 자체로 인식한 명백한 증거이다. 이

79) 津田左右吉에 의하면 法家가 時令을 法의 차원에서 이해한 반면 儒家는 禮로 보았다(同, 「時令とシナ思想」, 同著, 『津田左右吉全集』, 第十六卷, 東京, 1988, p. 587)고 하지만 적어도 전국말에 편찬된 十二月紀에 관한限, 이를 禮와 法 가운데 양자택일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각論으로서의 時令에 대한 總論으로서의 禮로 해석하는 쪽이 타당할 듯싶다. 律令과 禮의 이와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菊池英夫, 「律令法系の成立過程について - 禮と法と刑 - 」(唐代史研究會編, 『中國律令制の展開とその國家・社會との關係』, 東京, 1984) 참조.

80) 註 21 참조.

81) (孟春之月 天子) 朝于青陽左个 以出春令. 布德施惠慶賞 省徭賦; (孟夏之月 天子) 朝于明堂左个 以出夏令; (孟秋之月 天子) 朝于總章左个 以出秋令; (孟冬之月 天子) 朝于玄堂左个 以出冬令.

82) 島邦男에 의하면 輕重己의 현행본은 春始의 記載 외에는 脫漏와 錯簡 및 錯誤가 많지만, 春始에 의거하면 天子의 迎季의 記載와 時令은 四季의 初節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秋至 · 冬至의 時令은 秋始 · 冬始의 錯簡으로 판단된다고 한다(同, 『五行思想と禮記月令の研究』, pp. 79-82).

처럼 時則訓이나 輕重已에서 天子가 직접 四季의 '時令' 을 반포하는 것은 十二月紀에서의 天子가 단지 迎季의식의 거행만을 매개로 자연과의 합일을 체현함으로써 '時令' 의 관철을 꾀하는 것에 비해 그 신비성이 반감된다. 그것은 十二月紀나 時則訓에 보이는 天子의 전체적 신비성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더욱이 一年 간의 政令을 季節마다 반포한다는 것 역시 부자연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을 때 이같은 현상은 時令이 실천성을 상실한 형식적 의례로 전락하면서 거꾸로 보다 時令다운 형식을 추구한 결과 나타난 작위가 아닐 수 없다.

時則訓의 형식화에 따른 작위성은 天子와 明堂과 時令이 밀착되어 明堂이 天子의 時令반포 장소로 정착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즉, 十二月紀의 明堂이 天神의 강림지역이나 또는 天子가 天界와 교감하는 지역인 반면, 時則訓의 그것이 時令의 반포장소로서의 朝廷으로 세속화되는 차이<sup>83)</sup> 역시 時令의 형식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예컨대 十二月紀 孟春의 '無覆巢 … 無聚大衆 無置城郭' 과 時則訓 孟春의 '毋覆巢 … 毋聚衆置城郭' 에서도 드러나듯이 十二月紀가 禁止조항에서 사용한 '無'라는 어휘를 時則訓이 모두 '毋' 또는 '勿(敢)'로 바꾼<sup>84)</sup> 것도 後者 쪽의 보다 강한 禁止의 뉘앙스에서 보거나 또는 秦律과 같은 실제 律令의 條文에서 '毋(敢)'나 '勿(敢)' 등의 어휘가 禁止 명령으로 사용된 점<sup>85)</sup>에 비추어볼 때 禁令으로서의 時令의 형식을 보다 명확히 하기

83) 『淮南子』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明堂의 用例 中 ①이 보다 원초적 발상을 담은 형태로서 十二月紀의 明堂에 해당된다면 ②, ③은 時則訓의 그것에 상응한다고 여겨진다.

① 昔者 神農之治天下也 春生夏長秋收冬藏 月省時考 歲終獻功 以時嘗新 祀于明堂 明堂之制 有蓋而無四方('主術訓').

② 仰取象於天 俯取度於地 中取法於人 乃立明堂之朝 行明堂之令 以調陰陽之氣 以和四時之節('泰族訓').

③ 明堂之制 靜而法準 動而法繩 春治以規 秋治以矩 冬治以權 夏治以衡 是故燥濕寒暑以節之 甘雨膏露以時降('時則訓').

84) '無' 가 '勿' 로 수정된 용례는 다음 두 군데이다. '驅獸無害五穀(十二月紀 孟夏)'; '驅獸畜勿令害穀(時則訓 孟夏)'. '樹木方盛 無或斬伐(十二月紀 季夏)'; '樹木方盛 勿敢斬伐(時則訓 季夏)'. 특히 時則訓 季夏의 '勿敢' 은 律令 條文의 형식과 동일하다.

85) '春二月 毋敢伐材木山林及雍塞水 不夏月 毋敢夜草爲灰 …… 百姓犬入禁苑中而不追獸及捕獸者 勿敢殺' (『睡虎地秦墓竹簡』, p. 26).

위한 의도의 소산이라 해석할 수 있다.<sup>86)</sup>

주목할만한 점은 이것이 時則訓에만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 결코 아니라 는 것이다. 十二月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禮記』의 「月令」도 '無' 를 '毋'로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漢代 이후 편찬된 것이 확실시되는 『管子』의 「輕重己」에도 '毋', '勿' 등의 어휘가 많이 보이고 있다.<sup>87)</sup> 따라서 이같은 경향은 漢代 이후 時令의 형해화 및 형식화에 수반된 그 본질적 왜곡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 十二月紀와 달리 時則訓이 官僚와 民에 대해 각기 '命'과 '令'을 명확히 구분, 적용하는 것도 그러 한 형식화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以上에 의거해볼 때, 漢代 이후의 時令은 적어도 時則訓에서 특히 뚜렷 하게 확인되는限 이념적 치열성이나 시대적 특수성, 그리고 실천적 지향 성을 전혀 결여한 채 '時令'의 외양만이 현란하게 치장된 껍데기에 불과 하다. 그러한 時則訓과 비교해보면 十二月紀의 시대성과 그 실천적 지향 성은 보다 뚜렷해지며 따라서 그의 본질이 통일천하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통치의 大綱이자 典範이라는 것도 확실시된다. 문제는 이러한 통치의 大綱이 누구를 통해 그 실천적 의미가 실현되도록 입안되었는가에 있다. 물론 『呂氏春秋』가 천하를 통일할 군주의 독본<sup>88)</sup>이라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 자면 당연 十二月紀 역시 그런 군주를 위해 마련된 통치지침으로 이해될 터이지만, 필자로서는 그에 적극 찬동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章을 바꾸어 十二月紀를 특징지우는 관료 등장의 배경에 대한 검토를 매개삼아 다시 접근해보기로 하자.

86) 時令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禮記』「王制」에서 禁止어휘로서 '毋' 대신 '不'이 사용된 점(不殺胎 不夭夭 不覆巢)은 이같은 時則訓의 형식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87) 『管子』, 「輕重己」, 「(春始)發號出令曰 生而勿殺 賞而勿罰 罪獄勿斷 以待期年」; 「(夏始)發號出令曰 毋聚大衆 毋行大火 毋斷大木」.

88) 渡邊卓, 「古代の思想」, 中國文化叢書 3, 『思想史』, 東京, 1967, p. 82.

### III. 官僚의 등장과 그 의미

원초적 단계에서부터 漢代 이후까지의 時令資料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때 戰國末에 편찬된 十二月紀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는 두드러진 중요특징으로서는 時令의 시행주체로서 설정된 官僚의 등장을 놓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孟夏紀의 '命野虞 出行田原 勞農勸民 無或失時'라는 전형적 조항에서 보듯이 十二月紀의 골격을 이루는 政令은 대부분 天子가 관료에게 해당 政令의施行을 명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같은 형식은 夏小正처럼 民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觀象授時의 曆書로서의 전통적 시령은 물론이려니와 時令의 號令주체로서의 君만이 제시되고 있는 『管子』의 「幼官」 및 「四時」와 같은 戰國時令과도 현격한 대조를 보이는 十二月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인민이 아닌 官僚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게 時令의 집행을 명령한다는 것은 十二月紀가 일반인민을 직접 대상으로 반포될만한 次元의 實用曆이나 구체적 教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고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종래의 時令과 十二月紀의 본질적 차이를 재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十二月紀를 특징지우는 官僚의 등장에 함축되어있는 의미를 해명하는 일이야말로 十二月紀의 본질에 접근하는 관건이 되리라 믿는다.

물론 이와같은 특징이 十二月紀의 본질을 규정할 만큼 중요하기는커녕 단지 형식적 변화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尚書』의 「堯典」에 초보적이긴 하나 羲仲·羲叔·和仲·和叔이 帝堯의 命을 받아 春夏秋冬의 각 계절마다 四方에 배치되어 농민생활을 규제, 감독하는 官으로 설정되어있는 점을 보면 十二月紀에 나타난 時令 형식의 대폭적 변화는 戰國 時令의 전개上 이미 예견된 결과로 추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의 官僚가 직접적인 인민통치의 場에서 '守時力民' 함으로써 政令을 구체적으로 관철하는 존재로 인식된<sup>89)</sup> 점에 의거하면 官僚를 時令의 집행주체로 설정하는 十二月紀의 형식은 그다지 특이하달 것까

89) 『荀子』, 「富國」, '掩地表畝 刺草殖穀 多糞肥田 是農夫衆庶之事也。守時力民 進事長功 和齊百姓 使人不偷 是將率之事也。……若夫兼而覆之 兼而愛之 兼而制之 歲雖凶敗水旱 使百姓無凍餒之患 則是聖君賢相之事也。'; 『管子』, 「君臣」上, '相劃之 官守之 官劃之 民役之'; 同, '君據法而出令 有司奉命而行事 百姓順上而成俗。'

지는 없을 듯도 하고, 따라서 十二月紀를 특징지우는 관료의 등장은 一見 戰國 관료제의 발전에 照應한 時令의 자연스러운 외양적 자기 변모 以上 은 아닌 듯하기까지 하다. 필자 역시 이 점을 수긍하지 않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유독 十二月紀에 이르러 官僚가 時令의 시행주체로서 등장한 이유나 배경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그런 식의 표피적 설명으로는 성립시기에 있어 十二月紀와 별 차이없는 『管子』의 「幼官」·「四時」에 관료가 등장하지 않는 적극적 이유도 해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十二月紀에 관료제가 도입된 필연적인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상정될 수 있는 것은 十二月紀에 제시된 天子의 독특한 성격이다.

官僚의 등장 못지않게 十二月紀를 특징지우는 것은 바로 時令의 명령주체로서의 天子가 전편에 걸쳐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점이다. 필자로서는 찬동할 수 있지만 종래의 연구자들이 十二月紀의 성격을 '天子의 年中行事' <sup>90)</sup>나 또는 '天子 중심의 政治儀禮' <sup>91)</sup>로 규정하기도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같은 天子의 位相 설정이 통일된 천하질서를 주재할 강력한 帝王의 출현을 회구한 전국말의 시대정신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또 한편 夏小正과 같은 전통적 時令과는 달리 「堯典」이나 「幼官」 등의 戰國時令에 이미 時令의 명령주체가 출현하며 특히 이런 경향이 王者의 권력강조나 王者意識의 宣揚을 <sup>92)</sup> 저변에 깔고있다고 보면 十二月紀의 天子像은 그런 경향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天子의 등장은 그 획기성에 있어 관료제의 도입에는 뜻미친다고도 보인다. 어쨌든 十二月紀의 天子가 강력한 帝王의 권위를 과시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는데, 관료의 등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天子의 성격에서 극히 주목되는 점은 그가 세속적 전제군주이기보다는 오히려 원시국가의 首長을 방불하는 주술적 司祭王이라는 사실이다.

『呂氏春秋』의 여타 내용에 보이는 君主나 聖人이 그러하듯이 十二月紀의 天子는 天地萬物과 同類相引하고 感應함으로써 自然界와 人間界를 연

90) 板野長八, 『中國古代における人間觀の展開』, p. 254.

91) 町田三郎은 十二月紀를 '실천성을 상실한 天子의 정치의례이자 그에 수반된 관념화된 時令說'로 규정하는데(同, 「管子幼官攷」, p. 18) 앞서도 지적했듯이 十二月紀는 실천적 효용성을 떤 통치대강으로서, 필자는 그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다.

92) 町田三郎, 「時令說について」, pp. 58-59; 金谷治, 『管子の研究』, p. 228.

속시켜주는 呪術師였고 또한 天界 및 鬼神과의 합일을 위해 주술적 祭儀를 주재하는 巫祝이었다.<sup>93)</sup>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天子의 呪術的 행위의 이면에는 효율적 인민지배를 관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은 呪術的 天子像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한 그것을 君權견제나 君權에 소화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天子는 巫祝으로서 壯麗한 신비주의적 祭儀를 주재함으로써 그의 초월적 권위를 한층 제고시키는 동시에 권력적 자기파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질서를一身에 체현한 天子의 주술적 권위 下에 발포, 시행되는 政令은 그 時宜性과 정당성을 동시에 보장받게 된다. 말하자면 十二月紀에 제시된 呪術的 天子는 보다 강력한 초월적 절대자로서의 帝王像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의 소산으로 보이며 따라서 『呂氏春秋』의 君主論을 이른바 虛君主義의 표방으로 일컬어졌던 종래의 일부 견해<sup>94)</sup>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한데, 天子가 이처럼 초월적으로 군림할 뿐 통치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절대자라면 실제의 통치행정은 관료가 담당해야 할 것<sup>95)</sup>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바로 여기에 十二月紀가 종래의 時令 형식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면서까지 관료를 時令의 집행주체로서 등장시킨 적극적 의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十二月紀는 초월적 권위를 과시하는 天子와 그에게 결여된 세속성을 대신하는 주체적 실무관료의 상호보완적 관계로써 운용되는 천하질서의 이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十二月紀가 이처럼 관료의 주체적 역할이 적극적으로 기대되는 방향에서 新질서를 모색, 구상했다는 점을 중시해볼 때 十二月紀를 특징지우는 관료의 등장은 그의 구체적 편찬목적과 모종의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닐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十二月紀란 그들 관료를 대상으로 마련된 통치지침은 아닐까? 以下에서는 十二月紀에 보이는 관료제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그 점을 논증해보자.

93) 板野長八, 『中國古代における人間觀の展開』, 第八章, 「呂氏春秋」.

94) 郭沫若, 「呂不韋與秦王政的批判」, 『十批判書』(『郭沫若全集』歴史編, 第二卷, 北京, 1982); 竹岡八雄, 「呂氏春秋十二紀について」, 『東洋の社會と文化』5, 1956.

95) 『呂氏春秋』「本生」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적절하게 입증하고 있다. 즉, '始生之者天也 養成之者人也 能養天之所生而以勿櫻之謂天子 天子之動也 以全天爲故者也 此官之所自立也 立官者以全生也.'

十二月紀가 『荀子』의 「王制」篇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sup>96)</sup> 우선 篇名 자체에서부터도 알 수 있듯이 「王制」가 통일천하의 이상적 典範의 제시라는 점이 그러하고 또는 前章에서 인용했듯이 時宜합당한 政令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山林叢澤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 등은 十二月紀와 매우 흡사하다. 특히 주요한 官職과 그 職責을 서술한 「王制」의 '序官'의 내용은 十二月紀에 보이는 관료와 그들이 시행하는 時令의 내용을 방불한다. 이는 양자의 편찬의도가 대략 합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王制」의 '序官'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十二月紀의 관료제 설정의 배경과 그 의미를 추적해보기로 하자.

우선 「王制」에 보이는 司空·司徒·冢宰·虞師 등 대부분의 官職名으로부터 西周官制를 연상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듯하고,<sup>97)</sup> 따라서 이 「王制」의 職制를 다소의 수정 및 보충과 함께 추수하고 있는 十二月紀가 西周의 국가제도를 理想으로 삼고 있다는 것 역시 쉽사리 인정되는 바이다. 이처럼 「王制」와 十二月紀가 西周官制의 재현을 의도한 이면에는 전제군주를 위한 私屬기구로 전락한 戰國 관료제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先聖의 法'에 담겨진 公天下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복고주의적 가학의 논리가 엿보이는데 그것은 전통을 매개로 한 지배의 관찰이라는 十二月紀의 일관된 원칙과도 맞아떨어진다. 기실 「王制」와 달리 十二月紀에 相이나 太尉와 같은 戰國 秦의 官職이 절충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런 원칙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十二月紀의 相이 전국시대 相의 현실적 면모를 액면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相의 설정과 관련하여 十二月紀가 「王制」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王制」에서 丞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冢宰가 十二月紀에는 祭祀官으로 그 직능이 변경되고 있는 것<sup>98)</sup>이다. 十二月紀의 官名 및 직책이 대체로 「王制」의 그것을 답습하는 양상을 띠는 점이나 또는 十二月紀가 강하게 고수한 복

96) 이런 맥락에서 보면 '十二月紀의 月令형식은 夏小正의 영향일 것이고 그 내용은 『荀子』, 그 중에서도 특히 「王制」篇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견해(相原俊二, 「呂氏春秋の時令說(一)」, 『史學雜誌』 76-12, p. 48)는 매우 적절하고 따라서 종래 『管子』의 時令關聯諸篇과의 관계만을 중시했던 경향도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97) 물론 「王制」篇은 이를 周制라 명시하고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周의 官職을 의식하고 작성되었을 것이다(相原俊二, 「呂氏春秋の時令說(一)」, p. 50).

고주의적 지향성을 중시해볼 때 이같은 수정은 다소 의아하기조차 하다. 그 이유를 ‘당시 秦에 대표적 관직으로서 丞相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라’<sup>99)</sup>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아무래도 표피적 해석에 불과한 듯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十二月紀의 編者가 나름대로의 자료를 참조하여 宰宰를 비롯한 宰·宰祝 등 ‘宰’類의 관료를 모두 제사관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총재의 직능을 따로 마련한 대신 「王制」 쪽 총재의 기능을 그대로 답습하여 相을 설정한 것 같다. 말하자면 十二月紀의 相은 戰國 秦의 官制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荀子』에 개진된 宰宰나 相의 성격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十二月紀와 「王制」에 보이는 相과 宰宰의 역할을 비교해보자.

- ① 命相布德和令 行慶施惠 下及兆民. 慶賜遂行 無有不當.
- ② 本政教 正法則 兼聽而時稽之 度其功勞 論其慶賞 以時慎修 使百吏免盡而衆庶不偷 宰宰之事也.

①에서 相이 ‘布德和令’하고 ‘行慶施惠’하는 것은 ②에서 ‘本政教…論其慶賞’하는 宰宰의 역할과 거의 흡사하다. 이와 같은 양자의 유사성과 더불어 十二月紀가 「王制」 ‘序官’의 내용을 대부분 추수한 점을 다시 상기한다면 十二月紀의 相은 단지 官名만 바뀌었을뿐 「王制」의 宰宰와 동일한 官職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宰宰의 역할에 관한 ②의 언급이 『荀子』의 「王霸」에 ‘相者論列百官之長 要百事之聽 以飭朝廷臣下百吏之分 度其功勞 論其慶賞 歲終奉其成功 以效君’이라는 내용과 거의 일치된다는 점을 중시하면 十二月紀에 설정된 相의 官名 및 직책은 『荀子』의 그것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여 별 무리는 없다. 十二月紀가 周制의 재현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相이라는 官名을 채택한 주된 원인도 『荀子』의 相을 이상으로 삼은 데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荀子』에서 그 중요성이 누누히 강조되는 相의 성격이 君主의 同伴者的 보좌관, 즉 共治者로서 행정을

98) 「王制」, ‘本政教 正法則 兼聽而時稽之 度其功勞 論其慶賞 以時慎修 使百吏免盡而衆庶不偷 宰宰之事也’; 「季秋紀」, ‘命冢宰 農事備收 舉五種之要 藏帝籍之收於神倉 祇散必飭’.

99) 相原俊二, 「呂氏春秋의 時令說(一)」, p. 51.

총괄함과 아울러 전체 관료의 통솔 및 驤陟을 전담하는 관료집단의 총책 임자<sup>100)</sup>라 할진대, 그렇다면 이를 계승한 十二月紀의 相 역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天子를 대신하여 관료집단의 총책임자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존재였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相의 位相 설정은 관료집단의 주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十二月紀의 기본취지와 軌를 함께 한다.

「王制」와 상이한 十二月紀의 두드러진 양상은 祭禮官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王制」에서 太史가 제외되고 있는 반면 十二月紀에는 매우 중요한 관직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서 우선 입증된다. 太史는 본래 西周 太史寮의 長官으로서 冊名·圖籍·歷史記錄·祭祀·占卜·禮制·時令·天文曆法 등을 관장한 文官 및 神官의 領袖<sup>101)</sup>라 할 수 있는데 十二月紀에 보이는 太史의 職能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sup>102)</sup> 따라서 太史의 설정과 삭제라는 十二月紀와 「王制」의 차이는 祭祀를 매개로 하는 지배의 관철을 지향한 十二月紀의 編者와 '天人의 分'의 합리성을 견지했던 荀子의立場差를 뚜렷이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占卜이나 祈雨祭 등의迷信을 믿지않았던 荀子 역시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민통치를 위해 일정 정도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荀子는 「王制」에서 占卜 등을 담당하는 직책을 설정하긴 했지만, 그것이 太史와 같은 高位관료에 의해 관장될 필요까지는 없고 비천한 '곱사등이 亞나 절름발이 魏'<sup>103)</sup>이 담당하면 된다고 믿었다. 반면 祭祀와 占卜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十二月紀 쪽에서는 太史 이외에 占卜을 전담하는 太卜<sup>104)</sup>이나 宰·宰祝<sup>105)</sup>등의 祭禮官을 따로이 설정하고 있다. 十二月紀

100) 拙稿, 「戰國時代 官僚論의 展開」, 『東洋史學研究』 제25집, 1987, p. 9.

101) 楊寬, 「西周中央政權機構剖析」, 『歷史研究』 1984-1.

102) 「孟春紀」, 「命太史守典奉法 司天日月星辰之行; 「季冬紀」, 「乃命太史 次諸侯之列 賦之犧牲 以供皇天上帝社稷之享。」

103) 『荀子』 「王制」, '相陰陽 占祲兆 鉛龜陳卦 主攘擇五卜 知其吉凶天祥 僵巫跛擊 (=覲)之事也'.

104) 「孟冬紀」, 「命太卜 祀祠龜策占兆 審卦吉凶」.

105) 「孟冬紀」, 「宰歷卿大夫至于庶民土田之數 而賦之犧牲 以供山林名川之祀」; 「仲秋紀」, 「乃命宰祝 巡行犧牲 視全具 案芻豢 瞽肥瘠 察物色 必比類 量小大 視長短 皆中度. 五者備當 上帝其享」. 물론 「王制」에도 제사를 관장하는 宰가 보이지만(宰爵知賓客祭祀饗食犧牲之牢數), 十二月紀에서와 같은 순수 祭禮官과는 차이가 있다.

가 이처럼 祭禮官을 중시하는 경향은 東周시대 이후 祭禮官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간 현실<sup>106)</sup>과는 역행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 漢代 이후 祭禮를 관장하는 太常과 그 屬官인 太祝·太宰·太史·太卜이 설치된 현실에서 보면 결코 무의미한 발상으로 들릴 수만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制」의 「序官」과 十二月紀의 관료제는 내용상 다소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대체로 周制의 권위를 빌어 이상적 제도를 제시하려는 복고주의적 지향성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실 節候나 天子의 儀禮, 그리고 違令災異 등을 제외하고 十二月紀의 골격을 이루는 政令의 상당부분은 「序官」에 제시된 주요 관직 및 그 직책을 수정 보충하여 時令의 형태로 바꾼 뒤 적당한 月에 각기 분산배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며 따라서 十二月紀는 「序官」의 확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十二月紀의 전체 구성에서 官僚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텐데 그렇다고 해서 十二月紀의 편찬목적이 이상적 관료제의 구체상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十二月紀의 내용 가운데 특정 官職名이 明示되지 않은 채 단지 「命有司 云云」하는 형식의 政令이 적지않은 점<sup>107)</sup>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명약관화하다.

「命有司 운운」의 頻出은 통치의 大綱을 이루는 항목들을 제시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도입된 듯하고, 아울러 그런 항목들이 官僚에 의해 民과의 接點에서 구체적으로 시행, 관철되어야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관료를 政令의 시행주체로 삼는 것이 十二月紀의 저변에 일관하는 기본방침이었다고 해석해도 별로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면, 예컨대 「孟春紀」의 「命祀山林川澤 犲牲無用 牡 禁止伐木 無覆巢 無殺孩蟲胎夭飛鳥」나 「仲春紀」의 「無竭川澤 無濺陂池 無焚山林」 등의 山林 蔽澤에 관한 조항처럼 官僚가 明示되지 않은 政令들의 경우도 단지 관직이 생략된 것일뿐 기실은 관료를 시행의 주체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 大過 없을 것이다.

106) 鄭夏賢, 『戰國시대 官僚制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p. 14.

107) 「仲春紀」, 「命有司 省囹圄 去桎梏 無肆掠 止獄訟」; 「季春紀」, 「命有司 發倉廩 賦貧窮 振乏絕 開府庫 出幣帛 周天下 勉諸侯 聘名士 獎賢者」; 「仲夏紀」, 「命有司 為民祀山川百原 大雩帝 用盛樂」; 「孟秋紀」, 「命有司 修法制 繕囹圄 具桎梏 禁止姦 慎罪邪 務博執」; 「仲秋紀」, 「命有司 申嚴百刑 斬殺必當 無或枉燒 枉燒 不當 反受其殃」(「季秋紀」·「孟冬紀」·「仲冬紀」의 用例는 생략).

통치의 大綱을 담고있는 十二月紀가 이와같이 관료에게 政令의 시행을命하는 형식으로 짜여져있다는 사실은 또 한편 그 통치대강을 누구에게주지시킬 목적으로 편찬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같다. 즉, 政令과 관료의 본래적 상관성이나 政令이 갖는 통치원리의 성격에 비추어보면十二月紀는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인민을 직접대상으로 반포할 목적에서 입안된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官僚 및 士人層을 대상으로 제시된 통치의 대강이자 동시에 국가의 棟梁인 그들 관료가 필수적으로 체득해야할 행정의 기본지침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十二月紀에 제시된 관료들이 대부분 高位관료이거나 전국시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 관료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같은 해석은 一見 무리하다고도 보이지만, 기실 그것도 十二月紀가 '先王之例'의 이상이 구현된 통치의 典範임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관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 以上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十二月紀를 이처럼 官僚士人層이 修得해야 할 통치의 기본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서는 우선 仲夏紀와 仲冬紀에 爵子의 修身齋戒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한 점을 꼽을 수 있다. 爵子의 齋戒가 기존의 時令資料에서는 확인되지않는 매우 특이하고 생소한 부분이며 十二月紀의 여타 조항과도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볼 때 이는 十二月紀를 지침삼아 治民에 나서야할 官僚士人層의 바람직한 자세로서 설정된 항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十二月紀 전체를 명실상부한 天子의 年中行事로 규정할 수 있다면 여기서의 爵子는 당연 天子가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서술을 통해 그런 견해가 오류임이 명백해졌다고 보면 양자를 등치시킬 하등의 이유는 없다. 이는 十二月紀에屢見하는 天子 대신 굳이 爵子라는 어휘가 선택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爵子는 십이월기의 내용을 실현할만한 治者로서 天子와 官僚士人層을 함께 지칭한 것<sup>108)</sup>으로 보아야 타당할 듯싶다.

十二月紀가 官僚士人層을 대상으로 하여 마련된 행정의 典範이었다는 해석은 『呂氏春秋』의 전체적 構圖에서 보더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여겨

108) 이 爵子를 '君主를 비롯한 高官'로 보는 견해(板野長八, 「中國古代における人間觀の展開」, p. 255)는 적어도 爵子를 天子만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에서 필자의 입장과 상통한다. 아울러 十二月紀에 많은 영향을 미친 『荀子』에서의 爵子 역시 爵子와 上級官僚를 지칭하는 어휘이다(拙稿, 「戰國時代 官僚論의 展開」, p. 55).

진다. 『呂氏春秋』 자체가 官僚士人層을 주축으로 하는 爲政者를 대상으로 편찬된 理想國家論에 진배없기 때문이다.

물론 十二月紀가 그려하듯이 『呂氏春秋』는 외견상 君主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상적 君主論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시각에서는 그 편찬목적 역시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만간 도래할 통일천하의 지배자를 위해 통치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이를 용변하듯이 十二紀·八覽·六論의 주요 내용이 君主의 養生論이나 心術, 人君에 대한 실천적 교훈사항 등으로 짜여져있음<sup>109)</sup>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 이에 못지않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士論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呂氏春秋』를 결코 군주를 위해 마련된 통치지침으로 단언할 수만도 없다. 八覽과 六論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呂氏春秋』의 중추를 이루는 十二紀에서 바람직한 士의 자세를 주요내용으로 다룬 순수한 士論이 8편을 차지하며,<sup>110)</sup> 또한 그것이 理想國家의 정권담당자를 자임한 전국말 士人계급의 입장을 반영한다<sup>111)</sup>는 점이 우선 그를 입증한다.

더욱이 이런 士論이 단순히 『孟子』類에서 보이는 士의 자기선전이나 士人の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과 욕구의 반영으로 왜소화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제시된 士의 면모가 기존의 戰國諸子書에 보이는 士의 그것과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廉直의 성격변화라 할 수 있다. 즉, 士論에서 士의 바람직한 자세로서 누누히 강조되는 廉·直은 종래의 체제이탈적 또는 체제도전적 성격에서 忠과 결합된 체제내적 公廉·公直으로 전환, 정착되고<sup>112)</sup> 있는데 이는 곧 士論이 官僚士人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修得해야 할 바람직한 守職倫理나 군주에 대한 자세로서 제시된 것임을 입증한다. 官僚士人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 분명한 類似내용의 士論은 八覽·六論 도처에 보이는데, 특히 六論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士容論은 관료의 治民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그런 지향성을 더욱 확연히 드러낸다.

109) 赤塚忠, 「呂氏春秋の思想史的意義」 및 森三樹三郎, 『上古より漢代に至る姓名觀の展開』, 東京, 1971, 第十一章 「呂氏春秋」 참조.

110) 「仲冬紀」와 「季冬紀」에 각기 4편씩 부속된 「至忠」·「忠廉」·「當務」·「長見」 및 「士節」·「介立」·「誠廉」·「不侵」이 그것이다.

111) 竹岡八雄, 「呂氏春秋十二紀について」, pp. 19-25 참조.

112) 拙稿, 「戰國時代 官僚論의 展開」, pp. 40-47 참조.

우선 맨 앞에 위치한 「士容」 및 「務大」二篇은 士의 志操와 臣의 자세를 論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士容論 전체의 위상을 일정 정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주목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에 후속하는 「上農」 등 四篇의 성격이다. 이들 四篇이 농업의 중요성 및 농업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와같은 중국고대의 農書가 農官·牧民官에 의한 勸農의 書로서 저작되었던<sup>113)</sup> 점에 의거한다면 이 「上農」 등 四篇이 官僚士人層을 대상으로 편찬되었음<sup>114)</sup>을 확신할 수 있다. 특히 이들 四篇의 내용이 十二月紀의 농사관련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보면 그것은 관료사인이 修得해야 할 통치지침으로서의 十二月紀를 전제로 한 그 보충적 각論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以上 「呂氏春秋」의 여타 내용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十二月紀는 인민을 직접대상으로 반포될만한 구체적 '時令'도 아니었다면 통일천하를 주도할 天子만을 위해 마련된 통치 독본 역시 아니었고 오히려 실제 통치행정을 전담할 관료사인층을 대상으로 마련된 통치의 典範 또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고대 농업사회에서의 관료가 '守時力民'을 기본책무로 삼는 존재였다는 전제 위에, 漢代에 農業의 중요성을 늘상 강조한 정부가 달력 조정을 책임지고 그 사본을 관리에게 배부했던<sup>115)</sup>사실이나, 漢代에 편찬된 月令형태의 순수한 실용적 農事層인 「四民月令」이 종래 통설처럼 豪族사회내부의 농업경영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郡縣長吏의 四民통치를 위해 마련된 時令의 大綱이었다는 해석<sup>116)</sup>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감안해보면 十二月紀의 외양을 특징지우는 月令 형식도 통치지침으로서의 그 본질과 무관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113) 西山武一, 「アジア農業の原流」, 同著「アジア的農法と農業社會」, 1969, p. 36.

114) 西嶋定生에 의하면 「任地」 등 3편의 서술목적은 농민에 대해 농업기술을 가르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爲政者에게 農業의 理法을 설명하는데 있다(同, 「秦漢時代の農學」, 同著『中國經濟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66, pp. 39-40)고 하는데 여기서의 爲政者는 士容論 첫째 편과 관련지워볼 때 官僚로 해석할 수 있다.

115) Loewe,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p. 165.

116) 藤田勝久, 「四民月令の性格について」, 『東方學』第67輯, 1984.

## 맺음말

필자는 本論에서 『呂氏春秋』가 본래 일관된 지향성과 비교적 통일된 편집방침 위에서 완결된 新시대 待望의 政論書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無定見한 잡가적 편집물로 왜곡인식됨으로써, 그 書의 핵심을 이루는 十二月紀 역시 時令的 전개의 연속성이나 陰陽五行思想의 발전양상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되었을 뿐 그의 시대적 독자성이나 여타 篇들과의 관련성은 거의 간과되어왔다는 研究史的 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十二月紀를 지탱하는 이념적 원리와 그 편찬의 실천적 효용성이라는 과제를 설정, 해명해봄으로써 十二月紀의 실체에 접근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呂氏春秋』의 본래 위상을 부각, 검증해보고자 했다.

그 결과, 十二月紀는 전통적 時令의 실천적 기능을 계승, 온존한 實用曆이나 人民教導요령도 아니었지만 또한 陰陽五行說로 일관한 이념적 추상화나 그 이념의 時令의 구체화도 아니었음이 판명되었다. 오히려 그것은 전통적인 時令의 지배의 파정 이후 새롭게 현실개혁원리로서 전개된 戰國時令의 연장軸 위에 戰國最末期의 시대적 특수성이라는 또다른 軸이 접합된, 말하자면 통일된 천하질서에서 구현될 통치의 大綱이자 典範이었다. 특히 관료를 時令의 집행주체로 설정한 時令 형식上의 대폭적 수정이나 초월적 天子와 실무적 관료로 운용되는 천하질서의 기본구상에서 추정할 때 그것은 통일천하에서 실제 통치를 담당할 官僚士人層을 대상으로 마련된 행정의 기본지침이었다고 해석된다.

十二月紀가 이처럼 조만간 도래할 통일천하에 대한 구체적 전망 속에 新질서의 청사진으로서 제시된 실천적 대안이었다는 것은 그 내용의 저변을 일관하는 기본 통치방침의 탄력적 현실성에서도 간접적이나마 입증된다. 전통을 매개로 하는 지배의 관철로 요약되는 그의 인민지배원리는 전통적 관습 및 가치와 주술신앙이 여전히 뿌리깊게 잔존해있는 기충민간사회의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인식 및 그 적극적 수용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한 지배원리는 秦漢帝國에서 지배체제를 강화, 분식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 정책 및 제도에서도 역력히 엿보이기 때문이다.<sup>117)</sup> 물론 이와같은

117) 특히 前漢 文帝 때 藉田儀禮가 부활된 것(谷口義介, 「藉田儀禮の復活」 참조)

十二月紀의 인민지배원리에 陰陽五行思想이 강하게 반영, 수반되고 있음을 확실히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呪術신앙을 포함한 전통적 관습을 매개로 한 지배의 관철이라는 기본 통치이념을 체계적으로 보강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매개이념이나 부수원리였고 따라서 十二月紀 전체의 본질을 陰陽五行說의 時令的 구체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편상적인 발상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간과될 수 없는 것은 十二月紀에 보이는 陰陽五行說이 漢代 이후의 그것과 동일 수준에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除道의 경우만을 들더라도 十二月紀의 ‘開通道路 無有障塞’에 비해 『淮南子』「時則訓」의 ‘達路除道 從國始 至境止’ 및 ‘通路除道 從境始 至國而後已’는 陰陽理論에 의한 작위성이 매우 짙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十二月紀가 통일천하를 주재할 강력한 帝王의 출현을 희구한 전국말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또한 거기서의 天子가 조금만치의 오류도 자행하지 않을 전능한 聖人으로 位相설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十二月紀의 끝머리마다 보이는 違令災異說 역시 漢代 황제권 견제를 위한 天謹說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는 없으리라 해석된다. 오히려 그것은 「時則訓」 단계에서 새롭게 부가된 내용이 다시 十二月紀에 찬입된 결과였다고 도 추측되며 혹은 본래부터 있었던 내용이라 해도 그것은 天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官僚의 자의적 행정을 규제하기 위한 災異說이었을 가능성<sup>118)</sup>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서 本稿의 내용을 결론지워보건대 十二月

---

이나, 漢代 迎季儀式이 皇帝의 제사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儀式이었고 또한 皇帝와 百官의 참여 하에 노인을 위한 養老의식이 거행된 것(Loewe,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p. 142 참조) 등은 十二月紀의 내용이 실제의 제도로 구체화된 好例가 아닐 수 없다.

118) 이런 가능성의 근거로서는 違令災異說의 내용이 天下가 아닌 國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孟春紀」, 「孟春行夏令 則風雨不時 草木早槁 國乃有恐」; 「仲春紀」, 「仲春行秋令 則其國大水」; 「季春紀」, 「季春行冬令 則寒氣時發 草木皆肅 國有大恐」)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十二月紀를 포함하는 『呂氏春秋』가 외연上 封建制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封建制가 多元성을 억제당한 채 중앙집권적으로 재편되고 있는(板野長八, 『中國古代における人間觀の展開』, pp. 228-230) 점을 중시하면 國의 실체는 天子의 일원적 지배 下에 관료가 통치하는 직할행정단위로 해석된다.

紀를 핵심으로 하는 『呂氏春秋』는 결코 雜家的 편집물로 치부, 방치될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은 戰國에서 秦漢으로 이어지는 思想界的 흐름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로서 적극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것이 秦漢期에 상당한 加筆과 附益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된 많은 先秦諸子書<sup>119)</sup>와 달리 그 成立年代가 매우 뚜렷한 저술이고 보면 思想史에서의 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아니할 수 없다.

---

119) 金谷治, 『秦漢思想史研究』, 京都, 1981, pp. 20-21.